

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12-2호



**정당의 후보자 및 지도부 선출방식,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 주요국가 정당의 후보자 및 지도부 선출방식,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사례, 선거 관련 정치·입법현황의 파악을 위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등 6개국의 통신원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취합하였음.

2012. 4.

선 거 실
(법 제 과)

목 차

[제도 개요]	1
1. 영국	5
2. 독일	20
3. 프랑스	50
4. 미국	64
5. 호주	75
6. 일본	89

제도 개요

1. 영국

- 영국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는 지구당의 권한이 크게 보장되지만,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의 경우 코커스 또는 개방형 예비선거 등의 방식이 점차 도입되는 추세임.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사례는 없음.
- 영국 주요 정당들은 당원의 투표로 당대표 및 부대표를 선출하며, 비당원이 당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음. 당대표 선출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음.
- 영국에서 정당에 대한 법적규율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2000」 이 제정된 2000년 이후부터임. 영국 정당들은 정치적 ·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한 편으로 정당연합 및 선거연대 등에 적극적이지 않음.

2. 독일

- 독일 정당들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정당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함. 연방의회선거 후보자는 「연방의회선거법」 제21조에 따라 지역구별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함.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음.
- 「정당법」 제11조에 따라 독일 정당의 지도부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도부 선출은 2년마다 이루어져야 함. 정당 지도부 선출에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으며, 선관위에 위탁하는 사례도 없음.

- 「정당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당통합의 여부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함. 「정당법」에 정당연합 또는 선거연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연방의회선거에서 기민당과 기사당 간의 상시적인 선거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식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정당이 당헌 및 내규를 통해 선출방식을 결정함.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일반적으로는 비당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나, 2011년 사회당은 국민경선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도 함.
- 정당 지도부는 당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정당 지도부 선출 선거의 선관위 위탁사례는 없음.
-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와 관련된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연합이나 선거연대 등의 절차는 각 정당의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함.

4. 미국

- 미국 주요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통해 선출함. 대통령선거에서는 각 주에서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전국전당대회에서 당의 후보를 선출함.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정부기관에 위탁하지는 않으며, 다만 선거 관련

규정 준수 여부만을 감시함.

-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 지도부는 각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주 단위의 지도부 역시 주 위원회에서 선출됨. 지도부 선출에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기관에 지도부 선출선거를 위탁하지 않음.
- 미국에서는 정당통합, 정당연합과 관련한 법규는 없으며, 정당간의 또는 비정당조직간의 선거연대는 자유로이 허용되며, 이를 규정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음.

5. 호주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을 다른 법규는 없으며, 각 정당이 당헌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 노동당의 후보자 선출은 정당의 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자선출위원회가 담당하며, 자유당은 각 지구당의 당대회에서 선출함. 후보자 선출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사례는 없음.
- 일반적으로 당의 최고 결정기관은 전당대회이며, 집행부와 각 지구당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됨. 당의 집행부를 선출하는 절차는 따로 없음.
-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등의 절차를 다른 법규는 따로 없으며,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름. 정당연합의 구성은 호주의 선거제도인 선호 투표제에 영향을 많이 받음.

6. 일본

- 일본에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 선출방법이 달라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으며, 선관위 위탁사례도 없음.

- 일본 주요 정당의 지도부는 일반적으로 당원과 지지자의 선거로 선출되는데, 비당원의 참여가 가능함. 정당 지도부 선출선거를 정부기구에 위탁하는 사례는 없음.
- 일본의 정당통합에 관한 규정은 「정당조성법」에 명시됨. 정당연합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1990년대 이후 연립정권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당연합이 일반적 현상이 됨.



영국

영국 해외통신원 : 고영노

1.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 및 절차규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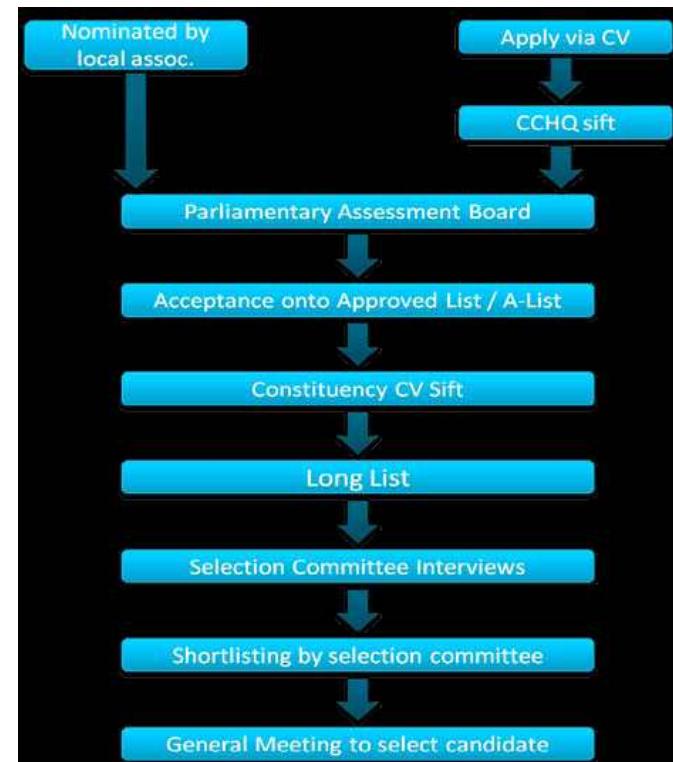
-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식은 정당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후보선출에 있어 지구당의 자치권이 크게 보장 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임.
- 하원의원 및 지방자치의회(런던의회,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회)의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는 지구당의 권한이 넓게 보장되고 있으나, 런던시장후보 등 지방선거후보자 선출의 경우 코커스 또는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 등 새로운 후보자 선출 방식이 점차 도입되는 추세임.
- 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을 선거위원회에 위탁한 사례는 없으며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 또는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하원의원 선거후보자 선출방법¹⁾

① 보수당

- 보수당의 하원의원 후보는 중앙당 사무국(Central Office)이 작성 및 관리하는 당 인증 후보자명부(the Party's Approved List of Candidates)에 등록되어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각 지구당(Constituency Association)이 자체 규정에 따라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있음.

<보수당 하원의원 후보 선정 절차>



1) 런던시장, 지방자치 의회 등 지방선거 경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0년 4월 보고서 참조

- 보수당 하원의원 후보 선출은 지구당 추천 또는 각 당원의 인증 후보자명부 등록 신청, 합숙후보선정위원회(Residential selection board) 심사, 당 부대표 심사 및 당 의회평가위원회(Parliamentary Assessment Board, PAB) 평가로 이루어지는 당 인증 후보자 명부 등록 → 지구당 심사(Constituency Sift) - 잠정 후보자 선정(Long Listing) → 중앙당 공천위원회 면접(Selection Committee Interviews) → 경선 최종 후보자 선정(Shortlisting by Selection Committee) → 전체 회의(General Meeting)에서 경선투표를 통한 최종후보자 선출의 순으로 진행됨.
- 당 인증 후보자 명부 등록은 등록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자신의 이력 및 입후보를 원하는 지역에서의 활동내역, 입후보를 희망하는 이유 등이 담긴 이력서를 중앙당의 보수당 보수당선거운동본부 후보자과(Candidates' Department at Conservative Campaign Headquarters, CCHQ)에 송부하고, CCHQ가 지원자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 최종 심사기관인 당 의회평가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심사를 요청하면, PAB가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²⁾
 - 지원자는 PAB에 출석하여 본인의 후보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PAB 출석이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당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대체적으로 등록률은 40%선인 것으로 나타남.³⁾

2) 당 인증 후보자 명단 등록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nservativewomen.org.uk/howto_candidat.asp> (2012.3.29 검색) 참조

3) Dick Leonard and Roger Mortimore, *Elections in Britain : A Voter's Guide* (5th edn, Palgrave Macmillan, 2005) 87쪽

- 당 인증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협직 보수당 하원의원, 실무자, 당직자 등으로 구성된 합숙후보선정위원회에서 48시간 동안 실무 대응능력 평가 등을 받게 되며 평가를 통과한 후보자는 다시 후보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당 부대표의 심사 및 당의회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잠정 후보자로 선정됨.⁴⁾
 - 합숙후보선정위원회에서 약 25%, 부대표 심사에서 약 40%의 지원자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남.⁵⁾
- 후보자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의 최종 경선투표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비당원 그룹이 잠정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 평가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보자선정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최종경선 후보자를 선정도록 함으로써 비당원의 경선과정 참여를 제도화하였음.⁶⁾
- 평가 과정을 모두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당 총회에서 경선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함.⁷⁾
 - 경선투표에는 당원만이 참가할 수 있음.
- 단, 보수당은 2006년부터 약 500여명의 인증 후보자 중 100~150명의 후보자를 우선 공천자(A-List)로 분류하여 필요시 특정 지구당에 전략공천 형태로 A-List에 등록된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지역구가 중앙당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사실상

4) Stepehn Ingle, *The British Party System* (4th edn, Routledge 2008) 95쪽

5) 상기 책, 같은쪽

6) Rhy Williams and Akash Paun, 'Party People : How do - and how should - British political parties select their parliamentary candidates? (Institute for Government report) 21쪽

7) Stepehn Ingle, 각주 4, 95쪽

중앙당의 A-List 후보 추천은 반 강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당과 지구당간의 마찰이 발생해온.⁸⁾

② 노동당

- 노동당은 각 지구당(Constituency Labour Party)이 중앙당이 보유하고 있는 당 추천 후보자명단을 참고하여 경선후보자를 선정한 후(Shortlisting), 경선 컨퍼런스에서 최종경선투표를 실시하여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하고 있음.
- 지구당 및 지구당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연계조직(affiliated organisations) 및 연계조직에 속한 노조에서 추천한 경선 후보자를 지구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평가하여 4~6인의 최종 경선투표 후보자를 선정한 후(shortlisting),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 경선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함.
 - 단, 보수당과는 달리 지구당이 반드시 중앙당의 추천 후보자 명단에 속한 후보를 추천해야 할 필요는 없음.⁹⁾
 - 경선투표 후보자 중 1인은 반드시 여성후보로 선출도록 하고 있음.
 - 최종 경선투표는 당원만이 참가할 수 있음.¹⁰⁾

8) 상기 책, 같은 쪽

9) Dick Leonard and Roger Mortimore, 각주 3, 88쪽

10) Labour Party Rule Book 2010, Chapter 5, C.7

③ 자민당

- 하원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지구당(Local Party)은 중앙당에서 작성 및 관리하는 전국인증후보패널(National Panel of Approved Candidates)에 등록된 후보들에게 하원의원 후보자 선출 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한 후, 각 지구당은 입후보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3~7인의 최종 경선 후보자명단을 확정하고(Shortlisting) 경선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출함.
 - 최종 경선 후보자 중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여성후보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수민족 후보자가 최종 경선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경선 컨퍼런스에 참석한 지구당 당원이 직접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보수당, 노동당 경선과는 달리, 자민당은 지역당(Regional Party)에 속한 모든 당원이 우편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경선 방식을 취하고 있음.¹¹⁾
- 경선투표에는 당원만이 참여할 수 있음.

(3)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 여부 및 법적규제

- 선거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영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선거를 관리한 사례는 없음.
- 정당의 후보자 경선과 관련한 법적 규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1) Dick Leonard and Roger Mortimore, 각주 3, 92쪽

2. 주요 정당의 지도부 선출방식

(1) 주요 정당의 지도부 구성 및 임기, 주요 권한

① 개요

-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통상 당대표와 당 주요 의결기관을 별도로 선출하고 있음.
- 통상 당대표, 부당대표, 내각 (또는 그림자 내각) 각료들 및 주요 당의 결기관이 영국 주요 정당의 당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정책결정 및 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대표 및 주요 의결기관이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주요 3당 모두 당현 및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전당대회 (National Conference)에서 결정토록 하여 당 지도부에 의한 정당 운영의 독점 및 전횡을 견제하고 있음.

② 보수당

- 보수당은 당대표 (Party Leader)와 당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최고 위원(Party Chairman), 부최고위원(Vice Chairman) 및 내각 (Cabinet, 집권시) 또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비집권시) 각료들이 당을 이끌고 있음.¹²⁾
- 당의 주요 정치적, 정책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당대표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내각은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보유함. 최고위원 및 부최고위원은 당대표의 결정사항을 당내에서 실현

12) <<http://www.conservatives.com/People.aspx>> (2012.3.29 검색)

하는 역할 및 중앙이사회 등 당내 주요 조직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¹³⁾

- 내각 및 원내보수당(Parliamentary Conservative Party)¹⁴⁾이 질적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관이나, 보수당에서는 사실상 당대표가 두 조직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바, 영국의 기타 주요 정당에 비해 당대표로의 권한 집중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짐.¹⁵⁾
- 당대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대표가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명하거나, 보수당 하원의원들이 불신임을 결의할 경우 당대표의 임기가 종료하게 됨.¹⁶⁾

③ 노동당

- 노동당은 당대표(leader), 부당대표(deputy leader) 내각(또는 그림자 내각),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위원들이 당의 주요 의사를 결정 및 집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당대표 및 내각이 정책 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전당대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국집행위원회가 당의 행정최고기구(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e party)로서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당대표 및 내각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¹⁷⁾

13) Stepehn Ingle, 각주 4, 65쪽

14) 보수당 하원의원 중 내각(또는 그림자내각) 각료를 제외한 일반의원(Backbenchers)으로 구성됨.

15) 상기책, 75쪽

16) Richard Kelly and Paul Lester, Leadership Elections : Conservative Party (House of Commons Report) SN/PC/1366, 7쪽

17) Stepehn Ingle, 각주 4, 82쪽

- 전국집행위원회는 당 정책자문위원회들의 허브로서 정책입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 최근에는 1990년 전당대회에서 신설된 전국정책포럼(National Policy Forum)이 정책협의 및 결정에 대한 전국집행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바, 전국집행위원회의 당대표 견제 및 정책 입안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¹⁸⁾
- 초기 노동당 내각은 당대표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였으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집권기간을 거치며 소수의 내각 각료와 자문 위원이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바, 총리 견제 및 정책 결정에 대한 내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 온 것으로 보임.¹⁹⁾
- 이밖에도, 노동당은 당직자 국장(Chief of Staff), 선거운동 및 공보를 담당하는 당직자 부국장(Deputy Chief of Staff), 전략기획국장(Director of Strategy and Planning), 정책 및 항변국장(Director of Policy and Rebuttal), 당원 및 지지자 관리국장(Director of Members and Supporters), 실무국장(Director of Field Operations), 당 운영국장(Director of Governance and Party Service), 공보국장(Director of Communications)으로 구성되는 당행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④ 자민당

- 자민당은 당원들이 선출하는 당대표와 자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선출하는 부당대표, 그림자내각 각료(Frontbenchers) 및 중앙집행부

18) 상기 책, 같은쪽.

19) 상기 책, 78쪽

(Federal Executive)가 당을 이끌고 있음.

- 당수가 정책, 의사결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영국의 기타 정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중앙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당대표에 대한 견제권한이 기타 정당에 비해 비교적 강한 편임.

(3) 당 지도부 선출절차

- 영국 주요 정당이 당 지도부 선출선택을 선관위에 위탁한 사례는 없음.
- 당 지도부 선거와 관련한 선거부정 또는 불법자금 제공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① 보수당

- 보수당은 당대표의 경우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대표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 부당대표는 선출된 당수가 임명토록 하고 있음.
- 당대표 선출 선거는 전임 당대표의 사망, 사임의사 표명 또는 15%의 현역 하원의원의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됨.²⁰⁾
- 당대표 경선을 담당하는 1922 위원회(1922 Committee) 위원장이 경선 실시를 공표하면 보수당 하원의원들이 서면을 통해 경선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하원의원 2인 이상의 서면 추천을 받은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함.

20) Richard Kelly and Paul Lester, 각주 15, 8쪽

- 1922 위원회 위원장이 경선관리위원회 역할을 수행
- 당대표 경선은 3인 이상의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경우 보수당 소속 하원들이 투표를 통해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결선투표 진출자 2인을 선출한 후, 경선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당원 자격을 유지한 당원들이 우편투표를 통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²¹⁾

<2005년 보수당 대표 최종 선거 결과>²²⁾

후보자	득표수	득표율
데이빗 카메론 (David Cameron)	134,446	68%
데이빗 데이비스 (David Davis)	64,398	32%
총 유권자 수	253,689	
유효표 / 투표율	198,844 / 78%	

② 노동당

- 노동당은 당대표와 부당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음.
- 당대표나 부당대표가 공석이 된 경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며, 공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선거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²³⁾
 - 당대표 또는 부당대표 중 공석이 발생하여 실시되는 경선의 경우 경선 출마를 위해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의 12.5%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공석이 없는 경우에 는 20%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후보로 인정됨.²⁴⁾

21) 상기 보고서, 8-9쪽

22) 상기 보고서, 5쪽

23) Richard Kelly, Paul Lester and Mary Durkin, 'Leadership Elections : Labour Party (House of Commons Report) SN/PC/3938, 3쪽

- 연계기관(affiliated organisations), 지구당(Constituency Labour Party) 및 노동당 유럽의회의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²⁵⁾
- 당대표 및 부당대표 경선 후보자는 반드시 하원의원이어야 함.²⁶⁾
- 추천된 후보자는 반드시 후보자 추천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함.²⁷⁾
- 유효한 후보자 추천이 있을 경우, 연례 전당대회의 최종 안건으로 공표됨. 단, 추천된 후보자가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후보사퇴로 간주함.²⁸⁾

<2010년 노동당 대표 선거 결과>²⁹⁾

(단위 : 득표율 %)

후보자	2차투표	3차투표	4차투표
앤디 버넘 (Andy Burnham)	10.41	/	/
에드 볼스 (Ed Balls)	13.23	16.02	/
데이빗 밀리반드 (David Milliband)	38.89	42.72	49.35
에드 밀리반드 (Ed Miliband)	34.47	41.26	50.65

- 투표는 전국집행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a) 노동당 소속 하원 및 유럽의회 의원 (b) 당원 (c) 연계기관의 회원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부문의 총 득표는 각 부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각 33.3%)에 맞게 환산하여 최종 득표율로 반영됨.³⁰⁾
 - 3인 이상이 출마한 경우, 선출 절차는 보수당과 같이 순차 투표를

24) 상기보고서, 같은쪽

25) 상기보고서, 같은쪽

26) 상기보고서, 같은쪽

27) 상기보고서, 같은쪽

28) 상기보고서, 같은쪽

29) 상기보고서, 12쪽

30) 상기보고서, 4쪽

통해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당대표를 선출함.

- 투표는 우편투표로 진행됨.

③ 자민당

- 자민당은 소속 하원 및 유럽의회의원의 별도의 투표 없이 전 당원이 우편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당대표 선거는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시 실시됨.³¹⁾
 - 당대표가 선거 실시를 요청한 경우
 - 당대표가 사망 또는 당대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당대표가 더 이상 하원의원이 아닌 경우
 - 당대표가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된 경우
 - 최소 75개 지구당의 당대표 소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 당대표 경선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사퇴, 투표용지 발송 및 회수, 투표일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경선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또는 기관을 선거관리자로 지명하여야 함.³²⁾
 - 통상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당 유력인사가 선거관리자 역할을 수행.
- 유효한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자민당 소속 하원의원의 제안 및 20개 이상 지구당(연계단체 포함)에 속한 200인 이상의 지지와

31) Richard Kelly, 'Leadership Elections : Liberal Democrats (House of Commons Report) SN/PC/3872, 2쪽

32) 상기보고서, 같은 쪽

자민당 소속 하원의원의 10%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며, 추천된 후보자는 명시적으로 추천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³³⁾

-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보수당 노동당과 같이 순차투표를 실시하여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선거 후보자를 가려내어 결선 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함.

<2007년 자민당 대표 선거 결과>

후보자	득표수	득표율(%)
닉 클렉 (Nick Clegg)	20,988	50.6
크리스 혼 (Chris Huhne)	20,477	49.4
유효투표 / 투표율 (%)		41,465 / 64.1

3.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 1989년에 자유당(Liberal Party)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이 통합하여 현재의 자민당을 구성한 것이 근래에 행해진 유일한 정당통합 사례이나,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PPERA 2000)」 제정시인 2000년 이전까지 정당에 관한 법적규율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통합에 관한 법적 규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정당통합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정당통합은, 기존 정당의 등록 해지 및 신규 정당의 등록에 관한 PPERA 2000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³⁴⁾

33) 상기보고서, 3쪽

34) 정당의 등록, 해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2월 보고서 참조

- 정당연합 및 선거연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법적 규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4. 결론

- 영국의 주요 정당인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시 보수당의 경우와 같이 간접적으로 비당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도부 선출선거는 참여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중앙당이 지구당의 공직후보선출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앙당, 지구당을 막론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큰바, 선거위원회에 해당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는 없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및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법적규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영국 정당들은 당헌, 당규에 의한 당의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한 편인바, 정당연합 및 선거연대 등 선거를 위한 정당간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독일

독일 통신원 : 배정범

1.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식

(1)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은 반드시 비밀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선거법과 각 정당의 당규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정당법 제17조).
- 「연방의회선거법」 제21조는 선거 후보자의 선출 등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연방의회선거 후보자는 각 지역구별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함.
 - 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총회는 소집 당시 독일 연방의회선거의 해당 선거구 안에서 선거권을 지니고 있는 당원들의 총회를 의미함.
 - 대의원대회는 당원총회를 통해 당원 중에 선출된 대표자들의 총회를 말함.
 - 후보자 선출 및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의 선출은 모두 반드시 비밀투표로 시행되어야 함.
 - 후보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현행 독일 연방의회 회기의 개시 후 32개월 후부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29개월 후부터 할 수 있음.

- 지역구별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州) 정당조직 등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투표가 시행되어야 하고, 재투표 결과는 최종적 효력이 있음.
- 주의회선거의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주의 선거법들에 규율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연방의회선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24조 참고).
- 선거법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은 각각의 당규에서 후보자 선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 의회의원 후보자 지명은 관할 지역조직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됨.

[관련 규정]

「정당법」

제17조 선거후보자 선출

국민대표자를 뽑는 선거의 후보자 선출은 비밀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선출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각 정당의 당규가 적용된다.

§ 17 Aufstellung von Wahlbewerbern

Die Aufstellung von Bewerbern für Wahlen zu Volksvertretungen muß in geheimer Abstimmung erfolgen. Die Aufstellung regeln die Wahlgesetze und die Satzungen der Parteien.

「연방의회선거법」

제21조 정당의 후보자 선출

(1) 지역구 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총회 또는 특별 대의원대회 내지는 일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었으며 다른 당의 당원이 아닌 자만을 지역구 선거 입후보시에 정당후보자라고 부를 수 있다. 지역구 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당원총회는 소집 당시 독일 연방의회선거의 해당 선거구 안에서 선거권을 지니고 있는 당원들의 충회를 말한다. 특별 대의원대회는 당원총회의 방식을 통해 당원 중에 선출된 대표자들의 집회를 말한다. 일반 대의원대회는 정당의 당규(정당법 제6조)에 따라 임박한 선거를

위해 당원총회의 방식을 통해 일반적으로 소집되는 집회를 말한다.

- (2) 다수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행정구 및 행정구가 없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가 행정구의 경계 또는 행정구 없는 도시의 경계를 분할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들의 공동 당원총회 또는 공동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될 수 있다.
 - (3) 후보자와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들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투표권을 지닌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후보자로 입후보할 권한을 지닌다. 후보자들에게는 적당한 시간 내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후보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현행 독일 연방의회 회기의 개시 후 32개월 후부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은 아무리 빨라도 29개월 후부터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의회가 조기에 해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4) 주(州) 정당조직 지도부, 또는 주(州) 정당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관할범위로 하는 하위 지역조직의 지도부 또는 이 경우를 대비하여 정당의 당규에서 미리 정해놓은 다른 조직 등이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재투표의 결과는 최종적 효력을 갖는다.
 - (5)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표자 선출,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결정권한, 후보자선출의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정당의 당규에 따른다.
 - (6) 후보자 선출에 관한 의사록은 집회의 장소와 시간, 소집의 형태, 참석한 당원의 숫자와 투표의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은 지역구 선거후보자 등록 시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집회의 주재자와 집회 참석자 중 2명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 앞에서 동조 제3항 제1문부터 제3문에 따른 사항들이 준수되었음을 선서에 갈음하여 보증해야 한다.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서에 갈음하는 그러한 보증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행정청으로 간주된다.
- § 21 Aufstellung von Parteibewerbern
- (1) Als Bewerber einer Partei kann in einem Kreiswahlvorschlag nur benannt werden, wer nicht Mitglied einer anderen Partei ist und in einer Mitgliederversammlung zur Wahl eines Wahlkreisbewerbers oder in einer besonderen oder allgemeinen Vertreterversammlung hierzu gewählt worden ist. Mitgliederversammlung zur Wahl eines Wahlkreisbewerbers ist eine Versammlung der im Zeitpunkt ihres Zusammentritts im Wahlkreis zum Deutschen Bundestag wahlberechtigten Mitglieder der Partei. Besondere Vertreterversammlung ist eine Versammlung der von einer derartigen Mitgliederversammlung aus ihrer Mitte gewählten Vertreter. Allgemeine Vertreterversammlung ist eine nach der Satzung der Partei (§ 6 des Parteiengesetzes) allgemein für bevorstehende Wahlen von einer derartigen Mitgliederversammlung aus

- ihrer Mitte bestellte Versammlung.
- (2) In Kreisen und kreisfreien Städten, die mehrere Wahlkreise umfassen, können die Bewerber für diejenigen Wahlkreise, deren Gebiet die Grenze des Kreises oder der kreisfreien Stadt nicht durchschneidet, in einer gemeinsamen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gewählt werden.
 - (3) Die Bewerber und die Vertreter für die Vertreterversammlungen werden in geheimer Abstimmung gewählt. Jeder stimmberechtigte Teilnehmer der Versammlung ist hierbei vorschlagsberechtigt. Den Bewerbern ist Gelegenheit zu geben, sich und ihr Programm der Versammlung in angemessener Zeit vorzustellen. Die Wahlen dürfen frühestens 32 Monate, für die Vertreterversammlungen frühestens 29 Monate nach Beginn d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stattfinden; dies gilt nicht, wenn die Wahlperiode vorzeitig endet.
 - (4) Der Vorstand des Landesverbandes oder, wenn Landesverbände nicht bestehen, die Vorstände der nächstniedrigen Gebietsverbände, in deren Bereich der Wahlkreis liegt, oder eine andere in der Parteisatzung hierfür vorgesehene Stelle können gegen den Beschuß einer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Einspruch erheben. Auf einen solchen Einspruch ist die Abstimmung zu wiederholen. Ihr Ergebnis ist endgültig.
 - (5) Das Nähere über die Wahl der Vertreter für die Vertreterversammlung, über die Einberufung und Beschußfähigkeit der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sowie über das Verfahren für die Wahl des Bewerbers regeln die Parteien durch ihre Satzungen.
 - (6) Eine Ausfertigung der Niederschrift über die Wahl des Bewerbers mit Angaben über Ort und Zeit der Versammlung, Form der Einladung, Zahl der erschienenen Mitglieder und Ergebnis der Abstimmung ist mit dem Kreiswahlvorschlag einzureichen. Hierbei haben der Leiter der Versammlung und zwei von dieser bestimmte Teilnehmer gegenüber dem Kreiswahlleiter an Eides Statt zu versichern, dass die Anforderungen gemäß Absatz 3 Satz 1 bis 3 beachtet worden sind. Der Kreiswahlleiter ist zur Abnahme einer solchen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ständig; er gilt als Behörde im Sinne des § 156 des Strafgesetzbuches.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선거법」
제24조 선거후보자 지명과 선거입후보의 승인

- (1) 각 정당들은 자신의 후보자들을 해당 선거구 내의 선거권 있는 당원들의 집회(당원총회)를 통해 또는 주의회 회기의 종료 전 18개월 이후의 기간에 당원들 중에 선출된 대표자들의 집회(대의원대회)를 통해 회기 종료 전 15개월 이후의 기간에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투표권 있는 참가자들은 모두 입후보할 권리가 있다. 후보자들에게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적당한 시간 안에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다수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시 선거구의 후보자는 공동 당원총회 또는 공동 대의원 대회를 통해 지명될 수 있다.
- (2) 정당의 선거 입후보는 주(州) 정당조직의 지도부에 의해, 또는 주(州) 정당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하위 정당조직의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직전 주(州)의회 회기 중에 의회 내 의석을 갖지 못했던 정당들은 그 외에도 선거입후보를 위해 선거구의 선거권자 중 최소 150명의 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입후보는 선거구 선거권자 중 최소 15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명은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문과 제3문의 경우 선거권자들의 서명 존재여부는 후보 등록 시에, 아무리 늦어도 등록기간의 경과 이전까지는 증명되어야 한다.
- (3) 한 명의 후보자를 위해 서명한 선거권자는 동시에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서명할 수 없다.
- (4) 각 정당들은 제1항의 규정 및 당규에 의거하여 후보자를 선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서면 동의서를 지난 후보자만이 선거입후보자로 받아들여진다. 동의는 취소될 수 없다.
- (5) 선거입후보의 승인, 규정에 부합하는 후보자 선출의 증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주의회선거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 24 Aufstellung von Wahlbewerbern und Unterzeichnung der Wahlvorschläge

- (1) Parteien müssen ihre Bewerber in einer Versammlung ihrer wahlberechtigten Mitglieder im Wahlkreis (Mitgliederversammlung) oder in einer Versammlung der von diesen nicht früher als 18 Monate vor Ablauf der Wahlperiode aus ihrer Mitte gewählten Vertreter (Vertreterversammlung) in den letzten 15 Monaten vor Ablauf der Wahlperiode in geheimer Wahl aufstellen. Jeder stimmberechtigte Teilnehmer der Versammlung ist hierbei vorschlagsberechtigt. Den Bewerbern ist Gelegenheit zu geben, sich und ihr Programm der Versammlung in angemessener Zeit vorzustellen. In Stadtkreisen, die mehrere ganze Wahlkreise umfassen, können die Bewerber für diese Wahlkreise in einer gemeinsamen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aufgestellt werden.
- (2) Wahlvorschläge von Parteien müssen von dem Vorstand des Landesverbands oder, wenn Landesverbände nicht bestehen, von den Vorständen der nächstniedrigen Gebietsverbände, in deren Bereich der Wahlkreis liegt, unterzeichnet sein. Parteien, die während der letzten Wahlperiode im Landtag nicht vertreten waren, bedürfen für ihre

Wahlvorschläge außerdem der Unterschriften von mindestens 150 Wahlberechtigten des Wahlkreises. Wahlvorschläge für Einzelbewerber müssen von mindestens 150 Wahlberechtigten des Wahlkreises unterzeichnet sein. Die Unterschriften müssen jeweils persönlich und handschriftlich geleistet werden. Die Wahlberechtigung der Unterzeichner ist in den Fällen der Sätze 2 und 3 bei Einreichung des Wahlvorschlags, spätestens bis zum Ablauf der Einreichungsfrist, nachzuweisen.

- (3) Die einen Wahlvorschlag unterzeichnenden Wahlberechtigten können nicht zugleich andere Wahlvorschläge unterzeichnen.
- (4) Parteien müssen nachweisen, dass sie ihre Bewerber nach den Vorschriften des Absatzes 1 und satzungsgemäß aufgestellt haben. In einen Wahlvorschlag dürfen nur Bewerber aufgenommen werden, die hierzu schriftlich ihre Zustimmung erteilt haben. Die Zustimmung ist unwiderruflich.
- (5) Das Nähere über die Unterzeichnung der Wahlvorschläge und über den Nachweis der ordnungsmäßigen Aufstellung der Bewerber bestimmt die Wahlordnung.

기민당 당규

제20조 (후보자 지명)

- (1) 후보자 지명과 후보자 지명을 위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할 권한이 있는 자는, 당해 선출을 위한 각각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점에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 국한되는데, 다만 이는 각각의 선거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 (2)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절차(이 당규의 제18조 제7항 제2호)는 최소한 아래의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각 선거구 범위가 기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가 하나의 기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가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 범위와 일치하거나 또는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각의 후보자선출의 유형과 방법의 확정
 2. 의결권, 투표의 유형과 방법, 필요한 득표수, 후보자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총회 내지는 대의원 대회의 의사록 및 입후보자 명단에 대한 심사, 승인 및 제출 등에 관한 의사록의 작성과 승인 등에 대한 규정
 3. 공직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집회의 유형에 대한 규정
 4. 선거구 대의원대회의 대표자 선출
 5. 선거구 및 주(州) 단위의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진행
 6. 의사일정 정보를 담은 소집안내서(소집 기한은 1주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부의 결

의를 통해 3일로 단축 가능)

7. 후보자선출을 위한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당원의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자의 확정

(3) 유럽연합의회선거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 지도부가 모든 주에 적용되는 공동명부(연방명부)를 제출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럽연합의회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은 연방 대의원 대회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후보자 명단 작성에 대해서는, 선거법들에 반하지 않는 한, 당규 제28조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연방 대의원대회의 소집, 의결, 진행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들과 후보자 선출 절차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민당의 당규와 기민당의 전당대회 업무규정상의 규정들이 준용된다.

모든 주에 적용되는 공동명부(연방명부)의 작성은, 제4문의 유보 하에, 직전 유럽연합의회선거의 결과에 기초하여 동트(D'hondt) 방식에 따라 기민당의 각 주(州)조직에 할당되는 비례대표 후보자 몫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기민당의 각 주(州)조직들은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대표자 회의는 이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모든 주에 적용되는 공동명부(연방명부)의 맨 앞 순위들은 유럽연합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낸 기민당의 주(州)조직들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자들로 채워진다. 나머지 자리들은 동트(D'hondt) 방식으로 분배되는데, 이 경우 첫 번째 반문(半文)에 의거하여 분배된 자리들이 계산에 포함된다.

§ 20 (Kandidatenaufstellung)

- (1) An der Aufstellung der Kandidaten und an der Wahl von Vertretern für eine Vertreterversammlung zum Zwecke der Kandidatenaufstellung können nur diejenigen Mitglieder der Partei mitwirken, die im Zeitpunkt des Zusammentritts der jeweiligen Versammlung zur betreffenden Wahl im Wahlgebiet wahlberechtigt sind, soweit das jeweilige Wahlgesetz dies vorschreibt.
- (2) Das Verfahren für die Aufstellung der Kandidaten (§ 18 Abs. 7 Ziffer 2 dieses Statuts) muss mindestens folgendes vorsehen:
 1. Festlegung der Art und Weise der Kandidatenaufstellung, wenn das jeweilige Wahlkreisgebiet dem Gebiet eines CDU-Kreisverbandes entspricht, wenn mehrere Wahlkreisgebiete zusammen dem Gebiet eines CDU-Kreisverbandes entsprechen oder wenn ein Wahlkreisgebiet das Gebiet mehrerer CDU-Kreisverbände oder von Teilen davon umfasst,
 2. Vorschriften über die Beschlussfähigkeit, die Art und Weise der Abstimmung, die jeweils erforderlichen Mehrheiten und die Aufnahme und Unterzeichnung der Niederschriften über die zum Zwecke der Kandidatenaufstellung erfolgenden

Mitgliederversammlungen oder Vertreterversammlungen sowie über die Prüfung, Unterzeichnung und Einreichung von Wahlvorschlägen,
3. Bestimmung der Art der Versammlung zur Aufstellung von Kandidaten zu öffentlichen Wahlen,
4. Wahl der Vertreter zu Vertreterversammlungen im Wahlkreis,
5. Einberufung und Leitung der Mitgliederversammlung oder Vertreterversammlung zum Zwecke der Kandidatenaufstellung auf Wahlkreis- und Landesebene,
6. Schriftform der Einladung unter Angabe der Tagesordnung, wobei die Ladungsfrist eine Woche beträgt, jedoch in dringenden Fällen durch Beschluss des zuständigen Vorstandes auf drei Tage abgekürzt werden kann,
7. Festlegung des Stichtages für die jeweils im Zusammenhang mit der Wahl von Vertretern für die Kandidatenaufstellung maßgeblichen Mitgliederzahlen.
(3) Die Bewerber und Ersatzbewerber für die Wahl zum Europäischen Parlament werden, sofern der Bundesvorstand gemäß § 8 Abs. 2 Europawahlgesetz sich für die Einreichung einer gemeinsamen Liste für alle Länder (Bundesliste) entscheidet, in geheimer Abstimmung von einer Bundesvertreterversammlung gewählt. Für deren Zusammensetzung gelten, soweit die Wahlgesetze nicht entgegenstehen, die Bestimmungen des § 28 des Statuts entsprechend; für die Einberufung, Beschlussfähigkeit, Leitung und Durchführung der Bundesvertreterversammlung sowie für das Verfahren für die Wahl der Bewerber gelten die Bestimmungen des Statuts und der Geschäftsordnung der CDU für Bundesparteitage entsprechend. Für die Aufstellung der gemeinsamen Liste für alle Länder (Bundesliste) werden vorbehaltlich Satz 4 die auf die CDU eines jeden beteiligten Bundeslandes entfallenden Listenplätze nach dem d'Hondtschen Verfahren aufgrund der Ergebnisse der vorausgegangenen Europawahl ermittelt. Die CDU in den Ländern hat für die ihr zustehenden Listenplätze das Vorschlagsrecht. Die Bundesvertreterversammlung kann hiervon nur mit Zweidrittelmehrheit abweichen. Die ersten Plätze der gemeinsamen Liste für alle Länder (Bundesliste) sind zunächst mit je einem Bewerber aus jedem Bundesland zu besetzen, in dem die CDU zur Europawahl kandidiert; die restlichen Plätze werden nach dem d'Hondtschen Verfahren verteilt, wobei die nach Halbsatz 1 verteilten Plätze angerechnet werden.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12조 후보 지명

(1) 기초의회 후보 및 직선 시장 후보는 지역조직에서 지명한다. 자치단체에 다수의 지역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조직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후보자가 지명된다.
(2) 군의회 후보 및 주(州)위원회 직선 위원 후보 또는 시장 후보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 조직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지명된다. 행정구역조직 및 주(州) 행정구역조직들이 이와 상이한 내용을 자신의 당규에 규정할 수 있다.
(3) 연방의회 및 주의회 후보자는 행정구역조직 내지는 정당 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관할 지역 조직이 지명한다.
(4) 선거법 및 당규에 반하지 않는 한, 관할 지도부는 기초의회 후보자, 직선 선출직 후보, 의회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5) 연방의회선거를 위한 각 주의 후보들은 정당 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주의 지역조직들 또는 주(州) 정당조직이 지명한다.
(6) 공직 및 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밀투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부사항은 당규의 선거규정에서 정한다.
(7) 선거법과 당규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이 관할 지도부들은 후보자 지명 절차, 예를 들어 그 기한, 대표자 선출 또는 전체 회의의 원칙 적용 등에 대한 지침을 발령할 수 있다. 후보자 지명 절차에 대해 해당되는 다수의 조직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급 지도부가 선거법 및 당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한다.
§ 12 Aufstellung von Kandidaten / -innen
(1) Kandidaten und Kandidatinnen für Gemeindevorstellungen und das Direktwahlamt der Bürgermeisterin oder des Bürgermeisters werden von den Ortsvereinen aufgestellt. Besteht in einer Gemeinde mehrere Ortsvereine, so werden die Kandidaten und Kandidatinnen durch Delegierte der zur Gemeinde gehörenden Ortsvereine aufgestellt.
(2) Kandidaten und Kandidatinnen für die Kreistage oder das Direktwahlamt des Landrates oder der Landrätin oder das der Oberbürgermeisterin oder des Oberbürgermeisters werden durch Delegierte der zu der Gebietskörperschaft gehörenden Ortsvereine aufgestellt. Dazu können Bezirke und Landesbezirke abweichende Regelungen in ihren Satzungen festlegen.
(3) Wahlkreisvorschläge für Bundestag und Landtage werden durch die örtlich zuständigen Organisationsgliederungen im Benehmen mit dem Bezirks- bzw. Parteivorstand beschlossen.
(4) Soweit die Wahlgesetze und Satzungen nicht entgegenstehen, können die zuständigen Vorstände beschließen, dass Kandidatinnen und Kandidaten für Gemeindevorstellungen,

- ein Direktwahlamt oder Parlamente von Vollversammlungen aufgestellt werden.
- (5) Landeswahlvorschläge für die Bundestagswahl werden von den Bezirken des Landes oder dem Landesverband im Benehmen mit dem Parteivorstand aufgestellt.
- (6) Die Abstimmung über Wahlvorschläge für öffentliche Ämter und Mandate ist geheim. Das Nähere regelt die Wahlordnung.
- (7) Die jeweils zuständigen Vorstände können, soweit die Wahlgesetze und Satzungen nicht entgegenstehen, Richtlinien über das Verfahren zur Kandidatenaufstellung, z. B. über Fristen, Delegiertenschlüssel oder die Anwendung des Vollversammlungsprinzips, erlassen. Können mehrere betroffene Gliederungen keine Einigung über das Verfahren der Kandidatenaufstellung erzielen, so entscheidet der nächst höhere Vorstand im Rahmen der Wahlgesetze und des Satzungsrechts.

(2)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의 비당원의 참여 허용 여부

- 독일 정당법, 연방의회선거법 및 각각의 주의회선거법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는 당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비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3)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 여부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각 정당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선관위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음.
- 국가의 일반적인 정당 재정지원제도 외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대해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등에 대한 규제

- 정당 내부에서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정당 내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됨. 각 정당은 「정당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 내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당규로 정하고 있음.
- 정당 내부에서의 후보자 지명을 위한 투표 행위 등은 형법상의 선거 관련 범죄의 대상이 되는 선거가 아님.
- 각 정당들은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정당의 중재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후보자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당규에 담고 있음.³⁵⁾

[관련 규정]

「정당법」

제14조 정당중재위원회

- (1) 개별적 당원과 정당 또는 정당의 지역조직 간의 분쟁 및 당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 등의 중재와 결정을 위하여 정당 및 정당의 지역조직에 각각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수의 지역조직들을 위한 공동의 중재위원회도 설치될 수 있다.
- (2) 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한다. 정당 또는 정당의 지역조직의 지도부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정당의 지역조직과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도 없다. 위원들은 독립적 지위를 지니며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3) 정당의 당규는 일반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상황별로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35) 기민당과 사민당의 당규는 모두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민당의 경우에는 ① 기민당 당규, ② 재정규정 및 당비규정, ③ 중재위원회 규정, ④ 기민당 업무규정, ⑤ 기민당 연방 전문위원회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위원회 규정은 총 4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민당의 경우에는 ① 조직규정, ② 선거규정, ③ 중재위원회 규정, ④ 재정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위원회 규정은 총 31조로 구성되어 있음.

(4) 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규정이 발령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정당한 절차, 편파성을 사유로 한 중재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 14 Parteischiedsgerichte

- (1) Zur Schlichtung und Entscheidung von Streitigkeiten der Partei oder eines Gebietsverbandes mit einzelnen Mitgliedern und Streitigkeiten über Auslegung und Anwendung der Satzung sind zumindest bei der Partei und den Gebietsverbänden der jeweils höchsten Stufe Schiedsgerichte zu bilden. Für mehrere Gebietsverbände der Kreisstufe können gemeinsame Schiedsgerichte gebildet werden.
- (2) Die Mitglieder der Schiedsgerichte werden für höchstens vier Jahre gewählt. Sie dürfen nicht Mitglied eines Vorstandes der Partei oder eines Gebietsverbandes sein, in einem Dienstverhältnis zu der Partei oder einem Gebietsverband stehen oder von ihnen regelmäßige Einkünfte beziehen. Sie sind unabhängig und an Weisungen nicht gebunden.
- (3) Die Satzung kann vorsehen, daß die Schiedsgerichte allgemein oder im Einzelfall mit Beisitzern besetzt werden, die von den Streitteilen paritätisch benannt werden.
- (4) Für die Tätigkeit des Schiedsgerichts ist eine Schiedsgerichtsordnung zu erlassen, die den Beteiligten rechtliches Gehör, ein gerechtes Verfahren und die Ablehnung eines Mitglieds des Schiedsgerichts wegen Befangenheit gewährleistet.

2. 주요정당의 지도부 선출방식

(1) 주요 정당의 지도부 구성 및 임기, 주요 권한

○ 「정당법」 제11조에서 정당의 지도부에 관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도부 선출은 매 2년마다 이루어져야 함.
- 당 지도부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당 지도부는 당을 이끌며 당을 대표함.
- 당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의장단을 당 지도부 내에 구성할 수 있음.

○ 기민당 당규 제33조와 제34조는 지도부의 구성 및 그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당규 제33조에 따르면 기민당의 연방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명예대표, 당대표, 사무총장, 4명의 당대표 대리인, 연방 자산관리인, 의장단 구성원 7명과 그 밖의 26명의 연방지도부 구성원들,
- 기민당 소속인 경우에 한해 연방수상, 독일 연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 독일 연방의회의 기민-기사당 의원단 대표, 유럽연합의회 의장, 유럽연합의회 내에 기민당이 소속된 의원단인 EVP-EDF 의원단 대표,
- 그 밖의 주(州)정당조직의 지도부들.

○ 기민당 당규 제34조는 지도부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방지도부는 연방 정당조직을 이끌며, 전당대회 등에서의 결의사항을 집행함.
- 당대표와 사무총장은 법원 내, 외적으로 연방 정당을 대표함.
- 연방지도부는 독일 연방의회 및 유럽연합의회 선거 후보자 지명 시에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력하며, 주(州)정당조직의 지도부들과 더불어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의장단은 연방지도부의 결의사항을 집행함.

○ 사민당은 당규 내 조직규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지도부의 구성 및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에 따르면 정당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당대표, ② 5명의 당대표 대리인, ③ 사무총장, ④ 재무담당자(자산관리인), ⑤ 유럽연합에 대해 정당지도부를

대표하는 사람, ⑥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숫자의 그 밖의 당원들, ⑦ 다만 정당지도부 구성원 총 숫자는 35명을 넘을 수 없으며, 남성과 여성 각각의 비율이 40%를 넘어야 함.

- 조직규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지도부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당지도부는 정당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지님.
- 지도부는 자신의 명의로 사민당의 권리들을 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음.
- 지도부는 법원 내, 외적으로 사민당을 대표함.
- 지도부는 정당이 지니는 양도 불가능한 인격권, 특히 성명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음.
- 사무총장은 정당의 정치적 업무들을 결의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정당 활동을 조정하며 연방의회 선거운동의 준비와 집행을 관掌함.
- 자산관리인은 정당의 재정, 자산, 예산업무를 수행함, ⑦ 지도부는 정당의 지역조직들과의 협의 하에 전체 정당 내부에서 재정 조정을 시행함.
- 지도부는 하위 정당조직 등을 언제든지 감사하고,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관련 규정]

「정당법」 제11조

- (1) 당 지도부의 선출은 최소한 매 2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부는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의회의원 및 당규에 기초한 당의 그 밖의 구성원들이 지도부에 소속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도부가 자신의 직책 또는 의원직을 선거를 통해 획득한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당원의 비율은 지도부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당 대표와 당 자산관리인은 친

정당 성격의 정치적 체단에서 유사한 직책을 맡을 수 없다.

- (3) 당 지도부는 당의 지역조직을 이끌며 법률과 정관 및 상급 기관의 결의사항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지도부는 민법 제26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에 기초하여 당의 지역조직을 대표하는데, 이는 다만 정관에서 이와 상이한 내용의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 (4) 지도부 결의사항의 실행 및 진행 중이거나 특별히 긴급한 지도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도부 구성원 중에서 업무집행을 관掌하는 지도부(의장단)가 구성될 수 있다. 의장단 구성원은 지도부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관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 11 Vorstand

- (1) Der Vorstand wird mindestens in jedem zweiten Kalenderjahr gewählt. Er muß aus mindestens drei Mitgliedern bestehen.
- (2) Dem Vorstand können Abgeordnete und andere Persönlichkeiten aus der Partei kraft Satzung angehören, wenn sie ihr Amt oder ihr Mandat aus einer Wahl erhalten haben. Der Anteil der nicht nach § 9 Abs. 4 gewählten Mitglieder darf ein Fünftel der Gesamtzahl der Vorstandsmitglieder nicht übersteigen. Vorsitzender und Schatzmeister einer Partei dürfen nicht in einer der Partei nahestehenden politischen Stiftung vergleichbare Funktionen ausüben.
- (3) Der Vorstand leitet den Gebietsverband und führt dessen Geschäfte nach Gesetz und Satzung sowie den Beschlüssen der ihm übergeordneten Organe. Er vertritt den Gebietsverband gemäß § 26 Absatz 1 Satz 2 und 3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soweit nicht die Satzung eine abweichende Regelung trifft.
- (4) Zur Durchführung der Beschlüsse des Vorstandes sowie zur Erledigung der laufenden und der besonders dringlichen Vorstandsgeschäfte kann aus der Mitte des Vorstandes ein geschäftsführender Vorstand (Präsidium) gebildet werden. Seine Mitglieder können auch vom Vorstand gewählt oder durch die Satzung bestimmt werden.

기민당 당규

제33조 (연방지도부의 구성)

- (1) 연방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명예대표, 대표, 사무총장, 4명의 당대표 대리인, 연방 자산관리인, 의장단 구성원 7명, 26명의 연방 지도부 구성원들,
 2. 기민당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연방수상, 독일 연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 독일 연방의회의 기민-기사당 의원단 대표, 유럽연합의회의 의장 및 유럽연합의회의 EVP-EDF 의원단 대표,

3. 제1호와 제2호에 의거하여 각 주(州)의 정당조직의 지도부가 연방지도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州)정당조직의 지도부들,
- (2) 연방 업무집행대표자는 연방지도부의 회의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다.
- (3) 연방지도부의 구성원은 대리인을 정할 수 없다.
- (4) 기민당에 소속된 각 주의 주지사들, 주(州)정당조직의 대표들, 정당의 연방협회 대표들은 연방지도부 회의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다. 이는 기민당에 소속된 유럽연합의회 내의 기민-기사당 그룹의 대표자 및 기민-기사당의 기독교 활동단체의 대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3 (Zusammensetzung des Bundesvorstandes)

(1) Der Bundesvorstand setzt sich zusammen aus:

1. den Ehrenvorsitzenden, dem Vorsitzenden, dem Generalsekretär, den vier Stellvertretenden Vorsitzenden, dem Bundesschatzmeister, sieben weiteren Mitgliedern des Präsidiums sowie den weiteren 26 gewählten Mitgliedern des Bundesvorstandes,
 2. dem Bundeskanzler, dem Präsidenten oder Vize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dem Vorsitzenden der CDU/CSU-Frakt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sowie dem Präsident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es und dem Vorsitzenden der EVP-EDFraktion des Europäischen Parlamentes, soweit sie der CDU angehören,
 3. den Vorsitzenden der Landesverbände, soweit nicht dem Bundesvorstand bereits Mitglieder aus dem jeweiligen Bundesland nach Ziffern 1 oder 2 angehören.
- (2) Der Bundesgeschäftsführer nimmt mit beratender Stimme an den Sitzungen des Bundesvorstandes teil.
- (3) Die Mitglieder des Bundesvorstandes können sich nicht vertreten lassen.
- (4) Die Ministerpräsidenten der Länder, soweit sie der CDU angehören, sowie die Vorsitzenden der Landesverbände und der Bundesvereinigungen der Partei nehmen an den Sitzungen des Bundesvorstandes beratend teil. Gleches gilt für den Vorsitzenden der CDU/CSU-Gruppe im Europäischen Parlament und für den Vorsitzenden des Evangelischen Arbeitskreises der CDU/CSU (EAK), soweit sie der CDU angehören.

기민당 당규

제34조 (연방지도부의 권한)

- (1) 연방지도부는 연방 정당조직을 이끈다. 연방지도부는 연방 전당대회 및 연방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연방지도부는 특히 연방 정당의 예산, 재정 결산, 특히 연방 정당의 연간결산보고서 및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전체의 재정보고서를 독일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재정보고서에

대한 사항 및 중기적 재정계획 등에 대해 의결한다.

- (2) 의장단은 연간 최소 3회 이상 주(州)정당조직 및 협회의 대표자들에게 연방지도부와 의장단의 활동 사항을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단은 연방 정당의 재정 현황과 변경사항, 특히 연방지도부에 의해 의결된 예산안 및 중기적 재정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 (3) 당대표와 사무총장은 법원 내, 외적으로 연방 정당을 대표한다.
- (4) 연방지도부는 회계감사인을 임명한다. 세부사항은 재정 및 당비규정에서 규정한다.
- (5) 연방지도부는 당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민당의 연방전문위원회 규정을 의결한다.
- (6) 연방지도부는 독일 연방의회 및 유럽연합의회 선거 후보자 지명 시에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력 한다. 연방지도부는 특히 관할 주(州)정당조직의 지도부들과 함께 연방의회선거법 제21조 제4항 및 유럽연합의회선거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7) 의장단은 연방지도부의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의장단은 특히 진행 중이거나 긴급한 연방지도부의 업무를 처리한다. 의장단은 연방지도부에게 5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는데, 재정위원회 위원은 연방지도부에 의해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제외한 연방지도부의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된다.

§ 34 (Zuständigkeiten des Bundesvorstandes)

- (1) Der Bundesvorstand leitet die Bundespartei. Er führt die Beschlüsse des Bundesparteitages und des Bundesausschusses durch. Er beschließt insbesondere über alle Etats der Bundespartei, über alle finanziellen Abschlüsse, insbesondere Jahresabschlüsse der Bundespartei, sowie über den vom Parteiengesetz vorgeschriebenen Rechenschaftsbericht der gesamten Partei vor dessen Weiterleitung an den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und über die mittelfristige Finanzplanung.
- (2) Das Präsidium berichtet mindestens dreimal jährlich den Vorsitzenden der Landesverbände und Vereinigungen über die Tätigkeit des Bundesvorstandes und des Präsidiums. Dabei berichtet das Präsidium auch über Stand und Entwicklung der Finanzen der Bundespartei, insbesondere über die vom Bundesvorstand beschlossenen Etats, sowie über die mittelfristige Finanzplanung.
- (3) Die Bundespartei wird durch den Vorsitzenden und den Generalsekretär gerichtlich und außergerichtlich vertreten.
- (4) Der Bundesvorstand bestellt den Revisionsbeauftragten der Bundespartei. Das Nähere regelt die Finanz- und Beitragsordnung.
- (5) Der Bundesvorstand beschließt über die Ordnung der Bundesfachausschüsse der CDU, die

- ihn bei seiner Arbeit unterstützen und beraten.
- (6) Der Bundesvorstand wirkt bei der Aufstellung der Kandidaten für die Wahlen zum Deutschen Bundestag und zum Europäischen Parlament im Rahmen der gesetzlichen Vorschriften mit. Der Bundesvorstand ist insbesondere neben dem zuständigen Landesvorstand berechtigt, nach § 21 Abs. 4 Bundeswahlgesetz und § 10 Abs. 4 Europawahlgesetz gegen den Beschluss einer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über die Bewerberaufstellung Einspruch zu erheben.
- (7) Das Präsidium führt die Beschlüsse des Bundesvorstandes aus. Es erledigt insbesondere die laufenden und dringlichen Geschäfte des Bundesvorstandes. Das Präsidium unterbreitet dem Bundesvorstand den Wahlvorschlag für einen aus fünf Mitgliedern bestehenden Haushaltsausschuss, den der Bundesvorstand aus seiner Mitte wählt und dem der Vorsitzende und der Generalsekretär nicht angehören dürfen. Die Wahl des Haushaltsausschusses erfolgt auf der 1. ordentlichen Sitzung des Bundesvorstandes nach seiner Konstituierung; der Wahlvorschlag des Präsidiums kann durch weitere Vorschläge aus der Mitte des Bundesvorstandes ergänzt werden. Den Vorsitz des Haushaltsausschusses führt der Bundesschatzmeister.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23조 정당지도부

(1) 정당지도부는 정당을 이끈다. 정당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당대표
- b) 5명의 당대표 대리인
- c) 사무총장
- d) 재무담당자(자산관리인)
- e) 유럽연합에 대해 정당지도부를 대표하는 사람
- f)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숫자의 그 밖의 당원들.

정당지도부 구성원 총 숫자는 35명을 넘을 수 없다. 개별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구성원 및 정당지도부의 구성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최소 40%를 넘어야 한다. 성별 비율은 당대표 대리인 선출 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 (2) 정당지도부의 선출은 전당대회에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각각 분리된 선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3) 1차 투표를 통한 선출의 경우, 유효투표수의 절대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 (4) 현직 지도부는 전당대회 2주 전에 대의원들에게 당 지도부 선거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전당대회의 진행 중에 후보자 추가 명단이 제출될 수 있다.
- (6) 추가로 제출되는 후보자 명단은 알파벳 순서에 따른 후보자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선거일 아침에 대의원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7) 정당지도부는 새로 선출된 정당지도부의 구성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8)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전당대회 회기에 자문역할로 참석한다. 자문역할을 하는 정당지도부 구성원들은 정당법 제11조 제2항이 의미하는 정당지도부 구성원이 아니다.

§ 23 Parteivorstand

- (1) Die Leitung der Partei obliegt dem Parteivorstand. Er besteht aus
- a) dem oder der Vorsitzenden,
 - b) fünf stellvertretenden Vorsitzenden,
 - c) dem Generalsekretär oder der Generalsekretärin,
 - d) dem Kassierer oder der Kassiererin (Schatzmeister bzw. Schatzmeisterin),
 - e) dem oder der Verantwortlichen des Parteivorstandes für die Europäische Union und
 - f) einer vom Parteitag festzusetzenden Zahl weiterer Mitglieder. Die Zahl der Mitglieder des Parteivorstandes darf insgesamt nicht mehr als 35 betragen. Unter den in Einzelwahl zu wählenden Mitgliedern sollen, unter den Mitgliedern des Parteivorstandes insgesamt müssen Männer und Frauen mindestens zu 40 % vertreten sein. Die Geschlechterquote soll auch bei der Wahl der Stellvertreter / -innen Berücksichtigung finden.
- (2) Die Wahl des Parteivorstandes erfolgt durch den Parteitag in getrennten Wahlgängen in der Reihenfolge der Nennung in Abs. 1. Die Wahlen zu a) bis e) erfolgen in Einzelwahl, zu f) in Listenwahl.
- (3) Im ersten Wahlgang ist die absolute Mehrheit der abgegebenen gültigen Stimmen erforderlich.
- (4) Der amtierende Vorstand soll zwei Wochen vor dem Parteitag den Delegierten einen Vorschlag zur Wahl des Vorstandes unterbreiten.
- (5) Aus den Reihen des Parteitages können zusätzliche Vorschläge unterbreitet werden.
- (6) Der ergänzte Wahlvorschlag soll die Namen der Kandidierenden in alphabetischer Folge aufführen und am Morgen des Wahltages den Delegierten vorliegen.
- (7) Der Parteivorstand bleibt bis zur Konstituierung des neu gewählten Parteivorstandes im Amt.
- (8) Der oder die Vorsitzende der Kontrollkommission nimmt an den Sitzungen des Parteivorstandes mit beratender Stimme teil. Beratende Vorstandsmitglieder sind nicht Parteivorstandsmitglieder im Sinne des § 11 Abs. 2 des Parteiengesetzes.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제24조 당의 업무집행**

- (1) 사무총장은 정당의 정치적 업무를 당대표 및 정당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정당의 결의사항에 따라 집행한다. 사무총장은 정당활동을 조정하며 중앙당을 이끌고 연방의회 선거운동의 준비와 집행을 관장한다. 사무총장은 당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연방 업무집행자를 임명한다.
- (2) 자산관리인은 정당의 재정업무, 자산업무, 예산업무를 수행한다. 자산관리인은 정당법 제23조에 따른 공적인 재정보고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3) 정당지도부는 정당의 지역조직들과의 협의 하에 전체 정당 내부에서의 재정 조정을 시행한다.

§ 24 Geschäftsführung der Partei

- (1) Der Generalsekretär oder die Generalsekretärin führt die politischen Geschäfte der Partei im Einvernehmen mit dem / der Vorsitzenden und dem Parteivorstand auf der Grundlage der Beschlüsse der Partei. Der Generalsekretär oder die Generalsekretärin koordiniert die Parteiarbeit, leitet die Parteizentrale und ist für die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Bundestagswahlkämpfe zuständig. Der Generalsekretär oder die Generalsekretärin bestellt im Einvernehmen mit dem Parteivorstand den Bundesgeschäftsführer / die Bundesgeschäftsführerin.
- (2) Dem Schatzmeister oder der Schatzmeisterin obliegt die Finanz- und Vermögensverwaltung und die Haushaltsbewirtschaftung der Partei. Der Schatzmeister oder die Schatzmeisterin ist verantwortlich für die öffentliche Rechenschaftslegung nach § 23 des Parteiengesetzes.
- (3) Der Parteivorstand führt innerhalb der Gesamtpartei im Einvernehmen mit den Bezirken einen Finanzausgleich durch.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제25조 정당지도부의 권한**

- (1) 각각의 정당지도부는 정당 내의 모든 금전과 그 밖의 특별 자산의 소유자이다. 정당지도부는 자신의 명의로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기초하여 사민당에 속하는 모든 권리들을 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정당지도부는 법원 내, 외적으로 정당을 대표한다. 관할법원은 베를린 법원으로 한다.
- (2) 정당지도부는 법인으로서 지니는 정당의 양도 불가능한 인격권, 특히 성명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다.
- (3) 정당지도부는 불참자의 의사반영 방법을 포함하는 의결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령한다.

- (4) 매 2년마다 개최되는 SPE 국제회의에 참석할 대표자들은 연방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사민당의 정당지도부는 이러한 대표자의 선출 시에 성별 비율을 고려하고 정당의 지역조직들 및 주(州)정당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당의 지역조직들 및 주(州)정당조직들은 자신들의 당원 숫자 비율에 부합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수로 구성된 후보자 명단을 정당지도부에 제출한다.

§ 25 Rechte des Parteivorstandes

- (1) Der jeweilige Parteivorstand ist Eigentümer aller vorhandenen Gelder und sonstigen Vermögensstücke. Er ist insbesondere berechtigt, in eigenem Namen und aus eigenem Recht alle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zustehenden Ansprüche gegen Schuldner und Schuldnerinnen geltend zu machen. Der Parteivorstand vertritt die Partei gerichtlich und außergerichtlich. Gerichtsstand ist Berlin.
- (2) Er ist ermächtigt, die sonst nicht übertragbaren Persönlichkeitsrechte der Partei als einer Körperschaft, insbesondere das Namensrecht, in eigenem Namen geltend zu machen.
- (3) Der Parteivorstand erlässt Richtlinien über Abstimmungsverfahren, einschließlich der Willensbildung unter Abwesenden.
- (4) Die Delegierten zum alle 2 Jahre stattfindenden Kongress der SPE werden auf dem Bundesparteitag gewählt. Der SPD-Parteivorstand hat bei seinem Vorschlag die Geschlechterquote zu berücksichtigen und auf die Berücksichtigung der Bezirke / Landesverbände zu achten. Die Bezirke / Landesverbände schlagen dafür dem Parteivorstand sowohl Frauen als auch Männer in der gleichen Anzahl entsprechend ihrer Mitgliederstärke vor.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제26조 정당지도부의 통제권한**

- (1) 정당지도부는 하위 정당조직들과 소속 사업체 및 공동 협력단체 등을 언제든지 감사하고, 정보제출을 요구하며,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지도부는 정당에 소속된 모든 법인들 및 공동 사업체의 회합에 자문역할로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 (2) 정당지도부는 하위조직(주(州)정당조직들, 각급 지역조직들)의 모든 지도부들로 하여금 공적인 재정 보고서 업무와 관련한 의무들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재정관리를 하는 그 밖의 모든 정당 내 조직체들에 대해서도 제1문의 규정이 준용된다.
- (3) 매년,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해의 제1사분기의 경과 시까지 지역조직의 지도부들은 정당지도부에게 자신의 활동사항, 정치적, 경제적 현황, 지역조직의 수입과 지출 내역, 정당지도부에 의해 배정된 재원의 사용 내역 등에 대해 보고한다.

- (4) 정당지도부는 당직과 의원직 수행에 있어 부여되는 책무에 대한 세부적 규정(행위규정)을 의결한다.
 (5) 지역조직들은 각각의 조직적 범위 내에 존재하는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다.

§ 26 Kontrollrechte des Parteivorstandes

- (1) Der Parteivorstand kann jederzeit die Organisationsgliederungen und deren Unternehmungen sowie Arbeitsgemeinschaften kontrollieren, Aufschlüsse anfordern und Abrechnungen verlangen. Er hat das Recht, an allen Zusammenkünften aller Parteikörperschaften und Arbeitsgemeinschaften beratend teilzunehmen.
- (2) Der Parteivorstand hat darauf hinzuwirken, dass jeder Vorstand einer Gliederung (Landesverband, Bezirk, Unterbezirk, Ortsverein) die Pflicht zur öffentlichen Rechenschaftslegung erfüllt. Für sonstige Organisationsformen der Partei mit eigenständiger Kassenführung gilt Satz 1 entsprechend.
- (3) Jährlich, spätestens mit Ablauf des ersten Quartals des neuen Jahres, erstatten die Bezirksvorstände Bericht an den Parteivorstand über ihre Tätigkeit, di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Lage, über Einnahmen und Ausgaben im Bezirk und die Verwendung der vom Parteivorstand überwiesenen Materialien.
- (4) Der Parteivorstand beschließt nähere Bestimmungen über die mit der Wahrnehmung von Funktionen und Mandaten verbundenen Verpflichtungen (Verhaltensregeln).
- (5) Die Bezirke können vorstehende Rechte in ihrem jeweiligen Organisationsbereich entsprechend wahrnehmen.

(2) 정당 지도부의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기민당과 사민당 모두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함.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의 총 숫자와 각 지역조직별 배분방식은 조금씩 다름(기민당 당규 제29조 제2항, 사민당 당규 조직 규정 제20조 참고).
- 기민당의 경우 총 1,000명의 지역조직 대의원들과 외국인 조직의 대의원들 및 명예대표 등으로 구성되는데, 총 1,000명의 지역조직 대의원들은

각급 지역조직들에 의해 또는 각 주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됨. 총 1,000명의 주(州)정당조직 대의원들 중 200명은 직전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민당 정당명부에 대한 제2차 투표의 주(州)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주(州)에 배분되며, 800명은 각 주(州)의 정당조직들의 당원 숫자 비율에 따라 배분됨. 연방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6개월 전 시점에 확정된 당원 숫자가 대의원 숫자 배분의 기준이 됨(기민당 당규 제28조 제1항 참고).

- 사민당의 경우 지역조직들의 전당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된 600명의 대의원들과 정당지도부 구성원들로 구성되는데, 600명의 대의원 배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우선 모든 지역조직들에 2명의 기본 대의원이 할당되며, 그 외의 대의원 숫자는 전당대회 소집 직전 연도에 산출된 당원수자의 비율에 따라 각 지역조직들에 배분됨. 지역조직의 당규에서는 지역조직에 배분된 대의원 숫자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급 지역조직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함.

[관련 규정]

기민당 당규 제28조 (연방 전당대회의 구성) 제1항

- (1) 연방 전당대회는 각급 지역조직들에 의해 또는 각 주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총 1,000명의 주(州)정당조직 대의원들과 외국인 조직의 대의원들 및 명예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총 1,000명의 주(州)정당조직 대의원들 중 200명은 직전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민당 정당명부에 대한 제2차 투표의 주(州)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주(州)에 배분되며, 800명은 각 주(州)의 정당조직들의 당원 숫자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연방 전당대회에서 각 주(州)에 배분되는 대의원 숫자는 동트(d'Hondt) 방식에 따른 최고치 상한제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정관 제22조에 따라 연방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6개월 전 시점에 확정된 당원 숫자가 대의원 숫자 배분의 기준이 된다.

(1) Der Bundesparteitag setzt sich zusammen aus 1000 Delegierten der Landesverbände, die von den Kreis-, Bezirks- oder Landesparteitagen gewählt werden, den Delegierten der Auslandsverbände und den Ehrenvorsitzenden. Von den 1000 Delegierten der Landesverbände werden 200 im Verhältnis der bei der letzten Wahl zum Deutschen Bundestag für die einzelnen Landeslisten der Christlich Demokratischen Union Deutschlands abgegebenen Zweitstimmen, 800 im Verhältnis der Mitgliederzahlen der einzelnen Landesverbände entsandt. Die Verteilung der Delegierten auf die einzelnen Landesverbände erfolgt bei allen Bundesparteitagen im Höchstzahlverfahren nach d'Hondt. Maßgeblich für die Verteilung der Delegiertensitze ist die Mitgliederzahl, die nach § 22 dieses Statuts sechs Monate vor dem Bundesparteitag festgestellt wird.

기민당 당규 제29조 (연방 전당대회의 권한) 제2항

(2) 연방 전당대회는 연방 지도부를 다음과 같은 순서의 독립된 선거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1. 당대표,
2. 당대표가 추천한 사무총장,
3. 4명의 당대표 대리인,
4. 연방 자산관리인,
5. 그 밖에 의장단에 속할 7명의 구성원,
6. 그 밖에 지도부에 속할 26명의 구성원,

연방 전당대회는 연방지도부의 추천에 따라 종신 명예대표를 정관에 기초하여 지도부 구성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연방 지도부의 구성원들은 매 2년마다 선출된다. 사무총장은 매 4년마다 선출된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전의에 따라 연방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자신의 직무 책임을 임기 전에 면제받을 수 있다. 연방위원회의 결의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언급된 연방 지도부의 구성원들과 명예대표 및 기민당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연방수상, 독일 연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 독일 연방의회의 기민-기사당 의원단 대표, 유럽연합의회 의장, 유럽연합의회의 EVP-ED-의원단의 대표 등이 의장단을 구성한다. 기민당에 소속된 각 주의 주지사들은 의장단 회의에 자문역할로 참석한다.

(2) Er wählt als Mitglieder des Bundesvorstandes in getrennten Wahlgängen:

1. den Vorsitzenden,
2. auf Vorschlag des Vorsitzenden den Generalsekretär,

3. vier Stellvertretende Vorsitzende,
4. den Bundesschatzmeister,
5. weitere sieben Mitglieder des Präsidiums,
6. weitere 26 Mitglieder des Bundesvorstandes.

Er kann auf Vorschlag des Bundesvorstandes Ehrenvorsitzende auf Lebenszeit als Vorstandsmitglieder kraft Satzung wählen; sie haben Sitz und Stimme in allen Organen der Bundespartei.

Die Mitglieder des Bundesvorstandes werden in jedem zweiten Kalenderjahr gewählt. Der Generalsekretär wird in jedem vierten Kalenderjahr gewählt; er kann jedoch auf Vorschlag des Vorsitzenden durch den Bundesausschuss vorzeitig von den Pflichten seines Amtes entbunden werden. Für den Beschluss des Bundesausschusses ist die Mehrheit seiner Mitglieder erforderlich.

Die unter Ziffer 1 bis 5 genannten Mitglieder des Bundesvorstandes und die Ehrenvorsitzenden sowie der Bundeskanzler, der Präsident oder der Vizepräsident des Deutschen Bundestages und der Vorsitzende der CDU/CSU-Frakt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sowie der Präsident des Europäischen Parlamentes und der Vorsitzende der EVP-ED-Fraktion des Europäischen Parlamentes, soweit sie der CDU angehören, bilden das Präsidium. Die Ministerpräsidenten der Länder, soweit sie der CDU angehören, nehmen an den Sitzungen des Präsidiums beratend teil.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15조 (전당대회, 구성) 제1항

(1) 전당대회는 정당의 최고 기구이다. 전당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정당 지역조직들의 전당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된 600명의 대의원들. 이 경우 모든 지역조직들에는 우선적으로 2명의 기본 대의원이 할당된다. 그 외의 대의원 숫자는 전당대회 소집 직전 연도에 선출된 당원수자의 비율에 따라 각 지역조직들에 배분된다. 지역조직의 당규에서는 지역조직에 배분된 대의원 숫자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급 지역 조직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정당지도부의 구성원들.

(1) Der Parteitag ist das oberste Organ der Partei. Er setzt sich zusammen:

1. Aus 600 von den Bezirksparteitagen in geheimer Abstimmung gewählten Delegierten. Dabei erhält jeder Bezirk vorab zwei Grundmandate. Die weiteren

Delegiertenmandate werden nach dem Verhältnis der abgerechneten Mitgliederzahlen des letzten Kalenderjahres vor Einberufung des Parteitags auf die Bezirke verteilt. Bezirkssatzungen können bestimmen, dass die Wahl der auf den Bezirk entfallenden Delegierten ganz oder teilweise durch die Unterbezirksparteitage erfolgt; dabei ist sicherzustellen, dass Frauen und Männer in der Delegation eines jeden Bezirkes mindestens zu je 40% vertreten sind.

2. Aus den Mitgliedern des Parteivorstandes.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20조 전당대회의 과제

전당대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지도부의 활동, 감사위원회의 활동, 연방의회 의원단의 활동, 정당법 제23조에 따른 재정보고서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의 확인
2. 정당지도부, 감사위원회, 연방 중재위원회, 매 2년마다 개최되는 SPE 국제회의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3. 제1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한 결의, 정당 조직 및 정당활동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결의
4. 제출된 청원에 대한 결의

Zu den Aufgaben des Parteitages gehören:

1. Entgegennahme des Berichtes über die Tätigkeit des Parteivorstandes, der Kontrollkommission und der Bundestagsfraktion sowie des Rechenschaftsberichtes gem. § 23 PartG;
2. die Wahl des Parteivorstandes, der Kontrollkommission, der Bundeschiedskommission und der Delegierten zum alle 2 Jahre stattfindenden Kongress der SPE;
3. die Beschlussfassung über die Berichte nach Ziffer 1, über die Parteiorganisation und alle das Partieleben berührenden Fragen;
4. die Beschlussfassung über die eingegangenen Anträge.

(3) 정당 지부도 선출과정에의 비당원의 참여 허용여부

비당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4) 정당의 지도부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 여부

- 정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투표는 각 정당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선관위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음.

(5) 정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등에 대한 규제

- 정당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는 형법상의 선거범죄의 대상이 되는 선거가 아님.
- 선거후보자 선출과 마찬가지로 정당지도부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 처리는 각 정당의 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됨.

3.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1) 정당통합 관련 규정

- 정당법은 정당의 통합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정당의 당규에 정당의 통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과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음(정당법 제6조제2항 제11호, 제9조제3항 참고).

- 한편 기민당은 당규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전당대회에서 정당통합을 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반면 사민당의 당규는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전당대회에서 정당통합을 의결한 경우, 이 사안에 대해 당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시켜 최종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관련 규정 참고).

[관련 규정]

정당법 제6조 (당규 및 정강) 제2항 제11호

(2)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11. 정당집회에서 정당의 해산 내지는 지역조직의 해산 또는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정당과 통합을 의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당원들의 동의 및 그 절차, 동의의 결과에 따라 결의는 승인, 변경 내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 Die Satzungen müssen Bestimmungen enthalten über

11. eine Urabstimmung der Mitglieder und das Verfahren, wenn der Parteitag die Auflösung der Partei oder des Gebietsverbandes oder die Verschmelzung mit anderen Parteien nach § 9 Abs. 3 beschlossen hat. Der Beschuß gilt nach dem Ergebnis der Urabstimmung als bestätigt, geändert oder aufgehoben,

정당법 제9조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전당대회, 총회)) 제3항

(3) 전당대회에서는 정당 내부의 지역 조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의 정강, 당규, 당비규정, 중재위원회 규정, 정당 해산 및 다른 정당과의 통합 등을 의결한다.

(3) Der Parteitag beschließt im Rahmen der Zuständigkeiten des Gebietsverbandes innerhalb der Partei über die Parteiprogramme, die Satzung, die Beitragsordnung, die Schiedsgerichtsordnung, die Auflösung sowie die Verschmelzung mit anderen Parteien.

기민당 당규 제29조 (연방 전당대회의 권한) 제7항

(7) 전당대회에서는 정당의 해산 및 다른 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의결한다.

(7) Er beschließt über die Auflösung der Partei und über die Verschmelzung mit einer oder mehreren anderen Parteien.

사민당 당규 조직규정 제36조 (해산, 통합, 탈퇴) 제1항

(1)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해산 또는 다른 정당과의 통합의 의결된 경우에는 당원 전체의 투표가 시행된다.

전당대회의 결의는 당원 전체의 투표결과에 따라 승인되거나 취소된다. 당원 전체의 투표결과에 따른 승인이 있기 전에 해산 또는 통합은 집행될 수 없다. 당원 전체의 투표에 대해서는 당원결의에 대한 규정들이 목적에 맞게 준용된다.

(1) Hat der Parteitag die Auflösung der Partei oder ihre Verschmelzung mit einer oder mehreren anderen Parteien beschlossen, so findet eine Urabstimmung statt. Der Beschluss des Parteitages wird durch das Ergebnis der Urabstimmung bestätigt oder aufgehoben; er darf nicht vor der Bestätigung durch die Urabstimmung ausgeführt werden. Für die Urabstimmung gelt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Mitgliederentscheid sinngemäß.

(2) 정당연합 관련 규정

○ 정당연합과 관련된 법률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독일에서는 연방의회 선거에 있어 기민당(CDU, 기독민주당)과 기사당(CSU, 기독사회당)간의 상시적인 선거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사당은 전국 정당이 아닌 바이에른 주에만 기반을 지닌 정당이며, 기민당은 전국 정당이지만 바이에른 주에는 지역 조직을 두고 있지 않음. 이 두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강이 비슷하여 선거연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연방의회 의원단도 기민-기사당 의원단으로 구성하여 활동함.

- 주의회 선거에서는 선거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사당은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에만 참여하며, 기민당은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에만 불참함.

- 연방의회 선거에서 이 두 정당의 선거연합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4년간 잠시 깨진 것을 제외하고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3) 선거 시기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거연대 협용여부

- 선거 시기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거연대와 관련한 법률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예를 들어 금속연맹 노조가 사민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에서와 같이 정당들 간에 선거 시기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연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음.
- 내각제의 특성상 한 정당이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므로, 연립정부 구성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당들 간의 협상을 통해 정책 등이 재조정됨.



프랑스

프랑스 해외통신원 : 김청진

1.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

-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4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정당은 자유롭게 결성하고 활동”하며, 이에 따라 프랑스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정당의 당헌 및 당 내규를 통해 선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있어 비당원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2011년 10월 사회당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비당원의 참여 여부는 각 정당(지도부)의 결정에 달렸음.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의 선거부정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에 관한 규제 혹 처벌 법률 존재하지 않으며,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감시 기관 및 제소 기관을 운영하고 당내 경선을 관리하고 있음.³⁶⁾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를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없음.

(1) UMP (Union pour Mouvement Populaire)

36) UMP의 경우, 선거 운동의 조직 및 통제위원회(commission d'organisation et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électorales) 및 이의 관련 전국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cours)가 있으며, 사회당의 경우 재무관리위원회(Commissions de contrôle financier) 및 분쟁위원회(Commissions des conflits)가 있음.

UMP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는 전통적으로 중앙지도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전국 단위 선거의 경우 공천권은 중앙 조직인 전국공천위원회(Comission nationale d'Investiture)에 있으며, 지방 선거의 경우에도 도당 위원회(Comité de départemental)³⁷⁾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음.

①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

- UMP 당헌 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당대회(Congrès)에서 당원들의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됨.³⁸⁾
- 당헌 49조에 따르면, 당 소속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는 경우, 당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³⁹⁾

② 전국단위 선거⁴⁰⁾ 후보 선출 방식

- 전국단위 선거의 경우, 후보자 공천 작업은 전국공천위원회⁴¹⁾가 맡게 됨(당헌 25조).
- 전국공천위원회는 도당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37) 도당 위원회는 해당 도(departement)의 지구당 위원회 대표들에 의해 선출되는 도당 위원장과 더불어 정치국에서 임명되는 도당 서기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 조직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음.

38) 2007년 1월 14일 베르사유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사르코지는 참가한 당원의 98,1%의 찬성을 얻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 있음(UMP 전체 당원 233,779명 중 69,06% 참여).

39) 2012년 2월 15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선 후보임을 선언했으나, 그 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경선 뿐 아니라 당대회 개최 또한 생략했음. 3월 11일 빌팽트(Villepinte)에서 열린 첫 대규모 선거 유세에서 UMP는 공식적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선언했음.

40) 전국공천위원회가 관여하고 있는 전국단위 선거는 다음과 같음 : 상하원선거(élections législatives/sénatoriales) 광역의회선거(élections régionales), 유럽의회선거(élections européennes) 및 거주지 3만명 이상 도시의 기초의회선거(élections municipales -villes de plus de 30 000 habitants)

41) 전국공천위원회(Comission nationale d'Investiture)는 비상임 전국 단위 조직으로, 위원회 구성원은 정치국(Bureau Politique)에 의해 지명됨.

공천 결정을 내리며, 전국평의회(Conseil National)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확정됨(당내규 30조).

- 이때 도당 위원회는 전국공천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 의견(avis)을 제시할 수 있음.

③ 지방선거 후보 선출 방식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권은 각 지역 도당위원회(Comité de départemental)에게 있음(당헌 제30조).

(2) 사회당 (Parti Socialiste)

사회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당내 민주주의에 따라 당원들의 보통 선거에 의한 선출을 원칙으로 함(당헌 9.1조 2항).

①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 (당헌 9.1조 5항)

대통령 후보는 당원들의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절대 과반수를 득표해야함. 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득표율 1위, 2위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치르게 됨.

② 지방선거 및 전국선거 후보자에 대한 승인(당헌 제 9.1조 3항)

- 지방선거 후보자의 최종 결정은 연합평의회(Conseil fédéral)의 승인이 필요함(도청 소재지 혹 거주자 2만 이상 도시 예외).
- 전국선거 후보자의 최종 결정은 전국평의회(Conseil National)의 승인이 필요함(도청 소재지 혹 거주자 2만 이상 도시 예외).

(3)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별 경선

금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하는 10명의 대선 후보 중 사회당, 유럽 환경 녹색당, 공산당(좌파 전선)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되었음.⁴²⁾

① 사회당 (Parti Socialiste)

- 2010년 7월 3일 전국대회(Convention nationale)에서 사회당은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시민경선”⁴³⁾을 결정하였음.
- 2011년 10월 9일 1차 경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전 사회당 대표와 마르틴 오브리 현 사회당 대표가 각각 과반 미달의 1위, 2위를 차지하여 2차 경선이 10월 16일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56.57%의 지지율을 얻은 프랑수아 올랑드가 사회당 대선 후보로 선출됨.
- 1차, 2차 경선에 각각 270만명, 290만명이 참여할 만큼, 사회당 시민경선은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음.

② 유럽 생태녹색당(Europe Ecologie-Les Verts, EELV)

- 2011년 6월 29일 당내 경선 1차 투표를 거쳐, 지난 7월 12일 벌어진 경선 2차 투표에서 에바 졸리(Eva Joly)는 58.16%의 지지를 받아 환경녹색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음.

42) Le Monde. 2011.6.9. "Primaire à gauche, mode d'emploi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1/06/09/primaire-a-gauche-mode-d-emploi_1534157_823448.html>" (2012.3.13 검색)

43)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사회당에 최소 1유로를 내고 좌파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간단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투표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사회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시민 경선”(primaires citoyennes)으로 명명하였음.

- 이 시민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럽 환경녹색당 혹은 독립생태 운동당(MEI)의 진성당원이거나, 10유로 이상을 기부한 협력자이어야 하며, 경선은 우편 및 인터넷으로 진행되었음.

③ 공산당(Parti Communiste Français, PCF)

- 작년 6월 공산당 지도부는 좌파 전선(Front de gauche)의 단일 후보로 장-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 좌파당(parti de gauche) 대표를 추대하기로 결정했고, 진성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 (2011년 6월 16~18일 3일간 실시)을 통해 멜랑숑 후보를 공산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음.
-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의 당비 납부 당원(최소한 3개월 이상 납부)이어야 함.

(4)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의 국가 지원 여부

-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국가위원회(CNCCFP)에서 발간된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 관련 대선후보 및 재정관리인의 자금 사용 지침’⁴⁴⁾에 의하면, 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 보조의 대상이 아님. 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경선은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당과 관련된 활동가, 당원 혹 경선 과정에 관심을 가진 일부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임.

44)"Election présidentielle: Financement de la campagne électorale – Mémento à l'usage du candidat et de son mandataire" CNCCF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nccfp.fr/docs/presidentielle/cnccfp_presidentielle_2012_memento_v20120322.pdf> (2012.3.12 검색) 참고

-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자에 한해서, 경선 과정에서 집행된 자금이 다가올 대선에서 일반 유권자의 표를 획득함에 목적이 있는 경우, 각 지출 사안별로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국가 보조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주요정당의 지도부 선출방식

(1)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⁴⁵⁾

- 전국단위 지도부의 선출방법은 정당지도부, 정치국, 전국 평의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비당원은 지도부 선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도부 선출 선거의 선관위 위탁 사례가 없음.

① 정당지도부(L'équipe dirigeante de l'Union, 당헌 제26~27조 및 당규 제7조)

- 대중운동연합의 지도부는 총재(Président), 부총재(Vice-Président), 사무총장(Scrétaire général), 회계과장(Trésorier)으로 구성됨.
- 지도부의 임기는 3년이며, 당대회⁴⁶⁾에서 당원들의 보통선거로 선출됨.
- 정치국(Bureau Politique)은 당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당 지도부 선거 후보자 명단을 배포해야 하며,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 비용으로

45) 2012년 1월 기준, UMP당원은 총 261,000명 수준(L'express, 2012.1.4.일자 기사 "Copé revendique 26 1.000 adhérents UMP") <http://www.lexpress.fr/actualite/politique/cope-revendique-261-000-adherents-ump_1067791.html> (2012.2.15 검색)

46) 당대회(Congrès)는 기본적으로 3년마다 소집되나, 긴급 현안에 대해서 정치국에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당 지도부 선출 선거는 당내 통제기관인 '선거 운동의 조직 및 통제 위원회(commission d'organisation et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électorales)'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짐.

동등한 예산을 할당함.

- 선거 당선자는 절대 과반수를 득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두 번의 선거를 실시함. 첫 번째 선거에서 절대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두 후보자만을 두고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 50% 이상 득표해야 당선됨.
- 선거 후보자는 당대회 개최일로부터 두 달 전에 선거 운동의 조직 및 통제 위원회(commission d'organisation et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électorales)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명한 서류를 5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서류를 검토한 후 당대회일로부터 45일 전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함.
- 당의 총재가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 경우,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이 당을 대표하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치국에서 선출됨 (당헌 제48~49조).⁴⁷⁾

② 정치국(Bureau Politique, 당헌 제23~25조 및 당규 제6조)

- 당 총재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조직으로 전당대회 회기 사이 당 운영·인사 등 광범위한 결정권을 가짐.
-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2인, 회계과장, 각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10인(5인은 당대회 시 득표 비례에 따라 선출, 5인은 의회에서 득표 비례에 따라 선출), 당대회 및 전국 평의회를 통해 선출된 30명의 대표자와 총리, 상하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임기는 3년임.

47) 현재 사무총장인 장프랑수아 코뻬(Jean-François Copé)가 UMP대표직을 수행 중

- 정치국을 주관하는 사무총장(Secrétariat général)은 당대회에서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부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ux Adjoints)은 총재가 임명함.
- 전국 평의회 구성원들은 각자 노선에 따라 정치국 대표자 선출을 위한 대표자명부를 제출하며, 1차 선거에서 절대 과반수를 득표하는 대표자명부에 정치국의 15석이 배분됨. 나머지 15석은 각 대표자명부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됨. 1차 선거에서 절대 과반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 2차 선거를 실시하여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대표자명부에 15석이 배분되며 마찬가지로 나머지 15인석은 각 대표자명부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됨.



- ③ 전국 평의회(Conseil National, 당헌 제19~20조 및 당규 5조)
 - 전당대회 회기 사이에 당의 주요 노선 및 방향을 조율하며, 정국에 따라 의제가 선정됨.
 -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2인, 회계과장 등 주요 당직자와 상하의원, 지방의원, 전직 대통령 및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은 3년마다 교체됨.

(2) 사회당 (Parti Socialiste) 조직

- 사회당의 전국단위 지도부는 서기장, 전국 평의회, 정치국으로 나눌 수 있음.
- 비당원은 정당 지도부 선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 지도부 선출 선거의 선관위 위탁 사례가 없음.

① 서기장(Première secrétaire)

- 서기장은 당대회 이후, 모든 당원들이 참여하는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서기장 선출 선거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임 가능함.
- 서기장은 절대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두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됨.
- 서기장은 전국서기관(secrétaires nationaux)들을 임명함.

② 전국 평의회(Conseil National) (당헌 7조)

- 전국평의회는 서기장(Première secrétaire), 당대회에서 선출된 204명의 평의원과 102명의 연합서기(Premiers Secrétaires fédéraux)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의 임기는 3년임.
- 당대회 개최시, 당원들은 분파(Motion)를 구성하게 되며, 각 분파의 인원수(투표권)에 비례하여 전국평의회 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음.
- 당대회(3년) 회기 사이에 당의 주요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며, 정례회의는 분기 별로 개최됨.

③ 정치국(Bureau national) 48) (당헌 7조)

- 정치국은 서기장 및 전국 평의회를 통해 선출한 54명의 의원과 연합서기가 지역 및 연합의 다양성을 고려해 추천한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됨(이들 전원이 전국 평의회 구성원이 됨)
- 전국 평의회를 통해 선출된 54명의 의원은 전국 평의회 내의 각 분파(Motion)별 의원수(투표권)에 비례하여 선출됨.
- 정치국은 매주 정기회의를 주최하며, 전국 평의회(3개월) 회기 사이에 당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짐.

3.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와 관련된 법규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의 연합, 선거연대의 절차 등은 각 정당의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함.

48) 비상임 전국 단위 조직으로 전국 공천 위원회(Comité d'orientation)가 있음.

- 프랑스 노조의 경우, 1980~90년대 이후 정치에 있어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의 총서기인 베르나르 티보 (Bernard Thibault)는 지난 1월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 회담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공공연히 멜랑숑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 이밖에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 대표 프랑수아 세레크(François Chérèque)와 노동자의 힘(FO) 전국비서인 장-클로드 메이리(Jean-Claude Mailly)의 경우, 현재까지 형식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르코지의 경제 정책에 반대했으며, 사회당 올랑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음.⁴⁹⁾
- 노조원은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할 수 있음.

(1) 정당 통합 사례

- 정당 통합을 포함한 단체의 설립,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단체결성에 관한 법률」⁵⁰⁾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49) Le Figaro. 2012.1.20. "Présidentielle : la neutralité des syndicats oubliées" <<http://www.lefigaro.fr/emploi/2012/01/19/09005-20120119ARTFIG00679-présidentielle-la-neutrale-des-syndicats-oubliées.php>> (2012.3.24. 검색)

L'Express. 2102. 2.3. "Pourquoi les syndicats ont perdu leur neutralité en 2012" <http://lexpansion.lexpress.fr/election-présidentielle-2012/pourquoi-les-syndicats-ont-perdu-leur-neutralité-en-2012_281501.html> (2012.3.24. 검색)

50) 「단체결성에 관한 1901년 7월 1일 법률(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570&dateTexte=20090506>> (2012.3.24. 검색) 이 밖에 단체 성립 등에 관한 법률로는 「단체결성에 관한 1901년 7월 1일 법률 시행을 위한 1901년 8월 16일 시행령(Décret du 16 août 1901 pris pour l'exécution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및 「국가와 도 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1999년 12월 22일 시행규칙(Circulaire du 22 décembre 1999 relative aux relations de l'Etat avec les associations dans les départements)」이 있음.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620&dateTexte=vig>>

- 일반적으로 정당 해산은 전당대회 등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결정됨.
- 다만 「단체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에 단체 재산은 구성원들에게 배분될 수 없고, 기타 단체(association), 공공이익집단(groupement d'intérêt public), 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지역공동체(collectivité locale) 혹은 공공기관(établissement public)으로 이전되어야 함.

①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의 통합 사례

- 공화국 연합(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RPR), 프랑스 민주연합(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UDF) 및 자유민주당(Démocratie Libérale) 등 프랑스 3대 중도 우파 정당으로 결성된 ‘대통령여당연합’(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UMP)은 2002년 11월 17일 파리 외곽 부르제 시에서 당원 1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대중운동연합’(UMP)을 출범시켰음.
- RPR와 DL은 2002년 9월 21일 각각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 해산과 UMP로의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UDF에서 탈당한 의원들(전체의 약 3분의 2)이 UMP로 입당하였음.

② 유럽 생태녹색당 (Europe Ecologie-Les Verts, EELV)의 사례⁵¹⁾

- 유럽 생태녹색당은 녹색당(Parti Verts)과 2009년 유럽의회 선거

및 2010년 프랑스 광역의회 선거에서 “유럽생태” 명부(list)에서 활동하는 생태주의자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정당임

- 1984년 창당한 프랑스 녹색당(Parti Verts)은 2010년 11월에 당원 투표를 실시하여 85.1%의 찬성으로 당명 및 당현을 수정하고 유럽 생태녹색당으로 재탄생했음.

(2) 정당 연합 및 선거 연대 사례

- 정당연합 및 선거연대 성립의 절차, 협약 등을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현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 또는 당원투표로 결정함.

① 좌파 전선(Front de gauche)의 사례

- 2008년 11월 18일 프랑스 공산당(PCF)과 좌파당(Parti de gauche)의 지도부는 두 정당이 선거 연대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좌파 진영의 결집을 요청했음.
- 좌파전선은 2009년 유럽의회선거와 2010년 광역의회지방선거, 2011년 중역의회지방선거 및 상원선거에서 6~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금년 대선에서는 장뤽 멜랑숑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하였음.

② 2010년 광역자치단체선거 결선투표 선거연대의 사례

- 지난 2010년 광역의회 2차 결선투표에서, 사회당-생태유럽-좌파 전선이 이룬 좌파 연대가 대승을 거둔바 있음.

(2012.3.24 검색)

51) 엄밀한 의미에서 유럽 생태녹색당의 경우는 합당의 예가 아니라, 지도부의 결정 및 당원 투표를 통해, 당명과 당현을 수정한 경우이므로 정당 통합 절차 상 다를 바 없음.

- 1차 투표에서는 어느 당도 전국적 단위 수준의 선거 연대를 이루지 못했으나, 2차 투표에서 녹색당과 좌파전선⁵²⁾은 사회당⁵³⁾과 선거 연대 결성을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음.

③ 사회당/유럽 생태녹색당, 2012년 대선 및 총선 선거 연대 사례

- 2011년 11월 15일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 사회당 대표와 쎄실 두플로(Cécile Duflot) 유럽 생태녹색당 전국 서기장은 2012년 대선 및 총선에서 선거 연대에 합의함.⁵⁴⁾⁵⁵⁾
- 두 정당 간의 선거 연대는 사회당 정치국(Bureau Politique)과 생태 녹색당 연방평의회(Conseil fédéral)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인 되었으며, 합의된 공약의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원전 비율 25% 축소, 원자로 24개 즉각 폐쇄, 60세 정년 보장, 2012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임.
- 이번 연대의 성립으로 생태녹색당은 2012년 하원 선거에서 파리의 선거구 한 곳을 포함, 전국 60여개 선거구에 단일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어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을 노릴 수 있게 됨.

52) 공산당의 경우, 선거 연대 최종 결정권을 지역 조직에 일임하여, 22개 광역 지역 중 17개 지역에서는 공산당 지역조직들이 중앙당 방침에 따라 움직였지만, 5개 광역에서는 1차 투표에서부터 사회당과 연대하여 단일 명부를 구성하였음.

53) 사회당의 오브리 총수는 1차 투표부터 좌파 연합을 결성하려고 했지만, 사회당 일부에서는 중도인 민주운동(Modem)과의 연대를 주장하였음. 전 대통령 후보 세그랑 루아얄(Ségolène Royal)은 중앙당 지침에 반하여, 자신이 출마한 광역의 사회당 후보자명부에 민주운동 후보들을 포함시켰음.

54) Le Monde. 2012.3.16. "Les principaux points de l'accord PS-EELV"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1/11/16/les-principaux-points-de-l'accord-ps-eelv_1604266_823448.html> (2012.3.24.검색)



미국 해외통신원 : 박세민

1.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식

(1)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미국 주요 정당(민주당, 공화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primeraries)와 코커스(caucus)로 볼 수 있음.⁵⁶⁾
- 미국 대통령선거의 예를 들면 각 당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각 주에서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delegates)들이 전국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⁵⁷⁾
 -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들(delegates)은 각 주 정당지부의 당헌 등에 따라 선출되는데 주요 방법은 프라이머리(primaries)와 코커스(caucus)임.

(2)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의 비당원의 참여⁵⁸⁾

56) <http://wiki.answers.com/Q/The_two_main_ways_of_selecting_candidates_to_represent_a_party_in_a_general_election_are> (2012.3.23 검색)

57) <<http://usgovinfo.about.com/cs/politicalsystem/a/delegateprocess.htm>> (2012.3.23 검색)

58) <<http://isprf.net/html/isprf/bbs/data/board/sns2/1331181419.pdf>> (2012.3.27검색)

-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통령선거 후보를 각 주의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비당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등으로 대의원들을 선출할 경우 비당원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음.
- 그 외에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시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채택하는 일부 주는 비당원의 참여가 가능
 - 민주당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 14개 주가 코커스를, 37개 주(72%)가 프라이머리를 채택했는데 그 중 25개 주가 오픈 프라이머리(전체 49%)를 12개 주가 클로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음.
 - 한편, 공화당은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 18개 주가 코커스, 33개 주(64%)가 프라이머리를 채택했고, 그 중 22개 주(전체 43%)가 개방형 프라이머리를, 11개주가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음.⁵⁹⁾

(3) 비당원의 참여규모 및 비중, 참여방식

- 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방식의 경우 당적이 없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당원의 참여가 가능하며, 비당원의 참여 규모 및 비중에 관해서는 규제가 없으나 구체적 참여 방식은 주마다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상대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여 일부러 본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낮은 상대당 후보에 표를 행사할 수도 있음.

59) 개방형 프라이머리는 유권자들이 사전에 정당에 등록하지 않고 투표 당일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반면, 폐쇄형은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특정 정당에 등록해야 함.

<미국 일부 주의 선출방식 규정⁶⁰⁾>

주	폐쇄형	개방형	준폐쇄형	근거규정 및 내용	대통령선거
앨라바마		민주당 공화당		Ala. Code §17-13-7 유권자 등록을 위해 당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방형
알래스카	공화당	민주당		Alaska Stat. §§15.25.014, 15.25.060 정당은 누가 자신들의 프라이머리에 선거할지 선택할 수 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전에 공화당원이어야 한다.	개방형
애리조나			민주당 공화당	Ariz. Att'y Gen. Op. No. I99-025 (R99-049) 애리조나 주는 전통적인 프라이머리 방식이 아닌 대통령 선거방식 ⁶¹⁾ 을 사용한다. 선거를 위해 유권자는 당에 등록되어야 한다.	폐쇄형
아칸소		민주당 공화당		Ark. Code Ann. §§7-7-306-308 유권자 등록을 위해 당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방형

(4)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 여부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는 해당 정당의 당헌(constitution) 등에 의해 진행되며 다만 선출방식(예: 오픈 프라이머리, 코커스)에 관해서는 각 주에서 주법을 통해 규제
- 따라서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주 정부기관(예: Missouri secretary of state 등)에 예비선거를 위탁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선거 관련 규정 준수여부만을 감시

60) <<http://www.fairvote.org/congressional-and-presidential-primaries-open-closed-semi-closed-and-top-two>> (2012.3.27 검색)

61) 프라이머리의 일종

- 아래 위스컨신 주와 같이 통상 선출 경비는 당원의 회비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충당 가능하나 주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부 당헌(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Wisconsin) ⁶²⁾	
4조 - 회비 및 재정	
제1항- 회비는 전국 민주당위원회의 요건을 반영하여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주, 카운티 등의 재정을 위한 자금은 회비이외의 재원에서 충당할 수 있다.	
Article IV -Dues and Finances	
Section 1 -Dues shall be set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ith consideration to be given to the requirements of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Section 2 -Funds for the treasuries of the state, district, county or authorized subdivisions may be solicited from sources other than membership dues.	

- 연방정부를 기준으로 볼 때 정당 지도부로 볼 수 있는 지위는 민주당·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 상원 원내총무, 하원 원내총무 등임.
- 한국에서는 당 지도부가 당 후보를 공천하나,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사실상 각 주에서 개최되는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 등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역할은 정당 정강 개발 및 선거 캠페인과 관련한 역할에 국한됨.
- 그러나 중앙당의 자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선거운동에 있어서 중앙당 지도부의 중요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정당 지도부는 의회내 자당 의원들을 통제하는데 있어 영향력이 크지 않음.⁶³⁾

(5)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규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이나 불법자금 제공 등에 대해 규제 또는 처벌하는 특별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형법 등 일반 규정으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주요정당의 지도부 선출방식

(1) 주요 정당의 지도부 구성 및 임기, 주요 권한

- 미국 정당의 지도부의 구성과 권한은 한국 정당의 지도부의 구성과 권한과 상당부분 다르다고 볼 수 있음.

62) <<http://d21971ua898zk6.cloudfront.net/39/cc/4/567/1/dpwconstitution.pdf>> (2012.3.27 검색)

① 민주당⁶⁴⁾

-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각주의 민주당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인구기준으로 각 주에서 선발된 200명 등을 위원으로 구성
-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의 정강을 정비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 등을 지원하는 전국위원회 역할을 총 지휘함.
- 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Debbie Wasserman Schultz이고 4명의 부의장이 있는데, 현 의장은 플로리다 주 연방하원의원이며 2011년 5월부터 의장직을 수행중임.

63) <<http://powertothepeople.wordpress.com/2009/09/13/%eb%af%b8%ea%b5%ad%ec%9d%98-%ec%a0%95%eb%8b%b9-%ca%b5%ac%ec%a1%b0/>> (2012.3.24 검색)

64) <http://en.wikipedia.org/wiki/Democratic_National_Committee> (2012.3.24 검색)

② 공화당⁶⁵⁾

- 전 위스콘신 공화당 의장인 라인스 프리번스(Reince Priebus)는 2011년 1월 14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 1856년 공화당 전국전당대회(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였는데, 초기에는 각 주에서 1명씩 선발된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나 각 주의 위원회 의장을 포함시키면서 점차 위원수가 늘어나서 현재(2011년)는 전체 168명의 위원이 있음.
- 공화당 전국위원회(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NC)는 공화당의 전국적 활동을 이끌기 위한 기구로서 공화당의 정강을 검토, 개발하고 전국적 선거운동 전략 및 모금활동을 담당

(2) 정당 지도부의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지도부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및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
- 각 주에서도 연방정부와 유사하게 각 주위원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여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주 지부 당헌에 규정되어 있음.

① 미주리 주 민주당

- 미주리 주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를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관으로 규정

65) <http://en.wikipedia.org/wiki/Republican_National_Committee> (2012.3.25 검색)

- 주위원회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의장, 부의장 등의 지도부가 선출되며 이러한 절차는 미주리 주 민주당 지부 당헌 등(constitution and bylaw)에 규정

미주리주민주당당헌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MISSOURI DEMOCRATIC PARTY)

섹션 1.02 주 위원회 당원들은 선거를 통해 의장, 부의장 (일인은 남성, 일인은 여성), 총무, 재무관(일인은 남성, 일인은 여성)을 선출한다.

섹션 2.02 미주리 민주당 지부의 당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최소 18세 이상이고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선언해야 하며 민주당 이외의 다른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섹션 3.01 주 위원회는 미주리 주 민주당 지부의 최고기관이며 다른 모든 기관은 주 위원회에 종속된다.

섹션 3.03 미주리 주 위원회 지도부로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관을 둔다.

SECTION 1.02- Officers

The members of the State Committee shall organize by electing a Chair and Vice Chair, one of whom shall be a woman and one of whom shall be a man, and a Secretary and a Treasurer, one of whom shall be a woman and one of whom shall be a man, all of whom may or may not be members of the State Committee and shall be elected in the order listed above.

SECTION 2.02 A member of the Missouri Democratic Party is anyone:

Who is at least 18 years of age;

Who declares that he or she is a Democrat; and

Who is not a member of any political party other than the Democratic Party.

SECTION 3.01 The State Committee shall be the supreme governing body of the Missouri Democratic Party and all other organizations in the State Party are subordinate to the State Committee.

SECTION 3.03 Officers of the State Committee of the Missouri Democratic Party shall include the following:

State Chair, Vice Chair, Secretary and Treasurer

② 유타 주 공화당

- 유타 주 공화당의 경우 주 공화당의 지도부를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관으로 구성
- 주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격년으로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관을 선거로 선출

유타주 공화당 당헌(Utah Republican Party Constitution, 2011 Official Version)⁶⁶⁾

- | |
|---|
| A. 지부 지도부. 주 지부의 지도부는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관으로 한다. |
| C. 지도부의 선출 |
| 1.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지부 대의원들이 훌수 해에 의장, 부의장, 총무, 재무관을 선출한다. |
| A. State Party Officers. The Officers of the State Party shall be the Chair, Vice-Chair, Secretary, and Treasurer. |
| C. Election of Officers. |
| 1. Delegates to the State Party organizing convention held on odd-number years shall elect the State Party Chair, Vice-Chair, Secretary, and Treasurer. |

(4) 정당의 지도부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 여부

- 연방정부 차원의 당 지도부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및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되는데 정부기관이 관여하지는 않음.
- 각 주 지부의 당 지도부 선출도 역시 정부기관이 관여하지는 않음.
- 다만 선거 후보 선출의 경우 동일하게 정부기관이 주관하지는 않으나 아래 유타주 사례와 같이 주법을 따라 프라이머리 등을 실시하여야 함.

유타주 공화당 당헌(Utah Republican Party Constitution, 2011 Official Version)

섹션 5. 프라이머리 선거

- A. 2명의 후보자가 주 지명 대회에서 지명되는 경우 양 후보자는 유타주법을 준수하면서 프라이머리 선거에 출마하여야 한다.
- B.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만이 공화당 프라이머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5. Primary Election

- A. When two candidates are nominated by the state nominating convention for the same office, both candidates shall run in a primary election in accordance with Utah Code.
- B. Only voters who are registered Republicans may vote in a Republican primary election.

(5) 정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규제

정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부정 또는 불법자금 제공 등을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으나, 다만 형법 등에 의해 처벌은 가능함.

66) <<http://www.utgop.org/pdf/Utah%20Republican%20Party%20Constitution.pdf>> (2012.3.25 검색)

3.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1) 정당통합 관련 규정

미국헌법에서는 정당(polynomial party)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률에서도 정당의 통합 절차, 요건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

- 2004년 대선 당시 이라크 전쟁 등에 반대하는 반전단체 등이 연합하여 부시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 당시 여러 시민단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스티커, 티셔츠 등 여러 상품 등에 로고를 붙여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음.
 - 다만 이러한 운동이 민주당과 공식적인 연대를 통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그림> 2004년 부시 낙선운동 로고

(2) 정당연합 관련 규정

- 미국에서는 정당연합의 절차 및 방식, 허용요건 등을 규제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정당연합의 구속력(예 : 정당간 연합관계의 파기 조건 등) 등에 대한 갈등은 공법(公法)분야가 아닌 사법(私法) 분야 관련법 (예: 계약법, 불법행위법)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의 정당연합의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양 정당(민주당, 공화당)과 제3정당(녹색당 등)간 지지층, 정당 규모 등의 차이가 커서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3) 선거시기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거연대 허용여부 및 조건

- 미국에서는 정당과 정당간 또는 비정당조직간 선거연대가 자유로이 허용되며 이를 규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호주

호주 해외통신원 : 천세환

1. 호주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

(1) 개요

- 호주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 및 절차규정은 각 정당 및 지구당의 당헌에 명시되어 있음.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의 비당원의 참여 허용 여부
 - 노동당과 자유당 양당 모두 명시적으로 비당원의 참여를 막는 조항은 없으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의 내용이 당원을 가리키는 점으로 보아 참여자격이 당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음.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규제 및 처벌
 - 각 정당의 당헌에 기본적인 규정이 명시 되어 있으며, 「연방선거법 1918(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에도 관련 규정이 있음.
 -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세세한 부정에 대해 따로 마련된 규제는 없으나, 전반적인 선거부정 및 불법자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을 후보자 선출과정에 적용할 수 있음.

(2) 노동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⁶⁷⁾의 지구당 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국 당헌의 근본방침을 각 주와 준주에서 따르도록 함.

① 공직 후보자 선출(노동당 전국 당헌 10(c))⁶⁸⁾

- 각 주와 연방에서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다음과 같은 차별 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를 따라야 함.
 - 노동당 보유석의 40% 이상은 여성, 40% 이상은 남성(이상 '최소 목표치')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 외 20%는 성별에 관계없이 채워질 수 있음.
- 전국집행위원회는 당헌 제10(c)조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 당헌 제15(d)조에 따르면 지구당 별로 하원의원들의 임무 충실향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포럼(candidate forums)을 필히 개최해야 함(노동당 당헌 15(d)(i)). 참고로, 후보자 포럼은 후보자 선출 과정의 일부로, 후보자 및 현직의원들이 정책 및 공약 등을 당원들과 토의하는 시스템임.
 - 하원의원들의 활동을 연방기관에 보고할 시스템 설정(노동당 당헌 15(d)(ii)).

67) 총 6개의 주 : New South Wales (NSW), Victoria (Vic.), Queensland (Qld.), South Australia (SA), Western Australia (WA), Tasmania (Tas.)와 2개의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Northern Territory (NT).

68) National Constitution of the Australian Labor Party, Public Office Preselection s10(c)

② 공직선거 후보 출마자의 기본 요소(당헌 제15조)

○ 후보자 선출 시

- (a) 당원 가입 요건을 충족함.
- (b) 관련 지구에 거주 할 것
- (c)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⁶⁹⁾에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③ 빅토리아 주 후보자 선출 방법

- 빅토리아 주 지구당의 경우 주 당대회(State Conference)에서 선출된 100명의 공직후보 선출위원회(Public Office Selection Committee)가 주 선거와 연방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택함.

(3) 자유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① 지구당에서의 후보선출(연방 당헌 제21장)

- 지구당 당헌 별로 주선거와 연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택할 것과, 후보가 지구당대회를 통해서 선출 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주 지구당 포럼이 관련 후보를 심사한 후, 후보 자격을 철회하고, 새 후보를 선출할 권한을 줌(당헌 제103(a)조).
- 다음 선거 실시 12개월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해야 함 (당헌 제104조).

69) <<http://www.aec.gov.au/>>

- 지구당 당헌에 명시되지 않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식은 연방 당대회 또는 연방 집행부에서 정함(당헌 제105조).

② 후보 선출 관련된 당 연방 집행부의 권한(연방 당헌 40(f))

- 후보자심사위원회(Candidate Review Committee)의 권고 하에, 연방 집행부는 후보자가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논란거리를 안고 있을 경우, 해당 지구당에 후보자 선출 혹은 지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당헌 40(f)(i)).
- (i)에서의 재검토와 해당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후에도 그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3분의 2 이상의 지구당 대표 포함) 결의로 후보자 선출 결정을 철회한 뒤, 해당 지구당에 새로운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강제할 수 있음(당헌 40(f)(ii)조).
- (i)에서 언급된 후보자심사위원회에는 연방정당대표, 연방정당부대표 2명, 해당 지구당 주 대표, 해당 지구당 주 부대표 2명 등이 포함됨 (당헌 40(f)(iii)).

③ 뉴사우스웨일즈 사례

-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NSW지구당 당헌 제21조~26조)
 - 해당 공직별로 선출위원회(Selection Committee)가 구성됨.
 - 공직으로는, 상원(25조), 하원(26조), NSW주 하원의원-대도시 선거지구(22조)와 지방 선거지구(23조), NSW주 상원(24조) 등이 포함됨.

(4)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의 선거부정 규제 및 처벌

① 노동당 기금 모금 행동 수칙(Code of Conduct for Fundraising)

○ 1994년 당대회 결정사항⁷⁰⁾ 중 관련 내용

- 현직 의원 혹은 후보자는 하나의 기부자 혹은 단체로부터 호주달러 3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는 것이 금지됨. 수령한 기부금은 “호주 노동당 선거운동 계좌(Australian Labor Party Campaign Account)”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 되어야 함.
- 조건부로 전달되는 기부금은 모두 거절해야 함.
- 수표는 모두 당의 명의로 전달되어야 함.
- 담배회사로부터의 기부금은 일절 금함.

② 자유당

○ 연방당헌 제27장 - 재정

- 각 지구당 별로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 업무, 그리고 연방 재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함(연방당헌 제69조~70조).
- 그 외 세부사항은 각 지구당 당헌에서 명시함.
- 연방 집행부는 매년 회계감사관을 임명해야 함(연방당헌 제74조).

○ NSW주 사례

- 주 당헌 제27조에서 전반적인 재정 관련 규제가 명시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대체적으로 노동당의 연방 당헌과

비슷한 내용을 명시함.

- 당의 재산은 당의 계좌 혹은 당 통제하의 투자기관에 입금되어야 함(주 당헌 27.1).
- 조건부 기부금은 절대 수수를 금함(주 당헌 27.3).
- 계좌명은 “호주 자유당, NSW지구당”으로 등록해야 함(주 당헌 27.4.1).
- 당의 정책 부서(Policy Branch)와 전문인 부서(Professional Branch)는 개별 계좌를 소유하지 말아야 함(주 당헌 27.4.3).

③ 「연방선거법」 관련 규정

○ 「연방형사법 1914」 제28조 정치적 자유의 방해⁷¹⁾.

- 협박 및 폭행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3년의 구금에 처함.

○ 「연방선거법 1918」 제326조 뇌물 수수(Bribery)

- 호주달러 5000달러 또는 2년의 구금, 또는 두 형벌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연방선거법 1918」 제327조 정치적 자유의 방해 외

- 다른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방해할 경우 호주달러 1000달러 또는 6개월의 구금, 또는 두 형벌 모두에 처할 수 있음.

- 특정 정당, 관련 지구당 및 후보에게 기부금을 준 것을 구실로 차별을 가할 경우(노조 가입 및 고용에 관한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할 경우) 호주달러 5000달러 또는 2년의 구금, 또는 두 형벌

70) decision of the 1994 conference

71) Interfering with political liberty

모두에 처할 수 있으며, 범인의 경우에는 호주달러 20,000달러의 별금형에 처함.

- 「연방선거법 1918」 제386조 뇌물 수수 및 부당 위압에 의한 자격 박탈
 - 형사법 제28조, 선거법 제326조와 제327조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2년간 하원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됨.
- 「연방선거법 1918」 제306조, 제306A조 - 특정 선물 · 용자금 수수 금지
 - 호주달러 10,000달러 이상의 기부금 혹은 용자금을 전달 시에는 기부자와 수령인 모두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연방정부는 이를 부당한 수입으로 간주하여 별금을 징수할 수 있음⁷²⁾.

2. 호주 주요정당의 지도부 선출 방식

(1) 개요

- 정당의 지도부 구성 및 선출과정을 규정한 법규는 따로 없으며, 각 정당의 당헌 · 당규에 따름.
- 정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의 비당원의 참여 허용여부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규정과 마찬가지로, 노동당과 자유당 양당 모두 명시적으로 비당원의 참여를 막는 당헌 조항은 없으나, 투표 자격은 당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임.
- 정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규제

72)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ea1918233/s386.html> (2012.3.29 검색)

- 정당의 지도부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사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정의 선거부정에 대한 치별규정과 동일함.

(2) 노동당의 지도부 구성

- 지도부에 해당하는 전당대회(National Conference)는 당 최고의 결정권한을 지니며(당헌 제5(b)조), 전국 집행부(National Executive)는 전당대회 외에 최고의 권한을 지님.
- 전당대회 구성 : 총 400명의 대표로 구성됨. 당의 전국 대표와 2명의 전국 부대표, 연방 상원 · 하원의회 소속의 각 당 대표와 부대표들, 연방하원의회 노동당이 선출한 6명의 대표, 각 주와 준주에서 선출된 주의회장, 기본 구성원(base component)으로 선출된 12명,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원의회 선거구 숫자의 2배에 해당하는 당원, 청년노동운동(Australian Young Labor) 대표 3명(당헌 제6조).
- 당 집행부의 구성 : 당의 전국대표(National President)와 전국 부대표 2명, 전당대회에서 선출 된 20명의 집행부원, 전국 총무, 연방하원 의원 노동당 대표, 각 주의 총무 등이 포함됨(당헌 제7조). 1년에 필히 3회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함.
- 집행부의 주요 권한 :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특별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관련 단체나 개인 또는 선거후보자로부터 지구당의 결정에 관련된 불만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지구당의 경영권을 인계받을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짐(당헌 제7조).

○ 지도부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별도의 선출 방법 없이 직무에 따라 구성원으로 포함됨.

(3) 자유당의 지도부 구성

○ 당의 최고 지도부는 연방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시에는 연방 집행부가 지도부로서의 권한을 지님.

- 연방 당대회의 구성(당헌 25조) : 각 지구당대표, 각 지구당 여성부대표, 지구당 청년자유운동(Young Liberal Movement of Australia) 대표, 각 지구당 별로 매년 혹은 2년마다 선출하는 10명의 대표, 연방 하원의회 대표(Parliamentary Leader) 및 부대표, 연방 상원의회 (Parliamentary Party in the Senate) 대표 및 부대표, 연방 청년자유운동 회장 및 부회장, 직속 전임연방 회장, 연방 여성위원회 대표, 연방 농촌위원회 회장 등이 포함됨. 집행부가 달리 의견을 내지 않는 이상 매년 1회의 연방 당대회를 개최하며, 당대회 간 2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함(당헌 제35조).

- 집행부 구성 : 연방 회장 및 부회장, 연방 상·하원의회 각각의 대표 및 부대표, 명예 연방 회계담당, 지구당별 대표 혹은 임명인, 연방 여성위원회 대표, 직속 전임 연방회장, 연방 청년자유운동 회장 및 부회장, 연방 농촌위원회 회장 등이 포함되며, 매년 약 4차례 정도 모임 (당헌 제39조).

- 임기 : 특정 임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성원별로 각자의 직무 임기에 따라 의회 및 집행부의 임기가 유지됨.

- 집행부의 주요 권한 : 본 당헌과 의회의 절대 결정권의 조건 하에, 앞서 언급된 공직선거후보자에 관한 결정권과, 위기에 처한 지구당의 경영권을 인계 받을 권리, 당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연방 선거 후보자 및 현 의원에 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지도부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별도의 선출 방법 없이 직무에 따라 당대회 및 집행부 구성원으로 포함됨.

3.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1) 정당통합 관련 규정

○ 정당통합의 절차 및 필수요건을 다루는 법률은 없으나 최근의 정당 통합 사례를 보면, 관련 지구정당의 국민투표⁷³⁾와 당헌 채택, 전당대회 개최 및 호주선거관리위원회에의 등록 등이 요구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존 정당의 자산, 조직 및 구성원 승계방식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따라서 통합 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통합절차는 당헌에 따름.

○ 통합 정당의 새 당헌의 내용은, 통합 이전의 양 정당 대표들의 논의와 채택 하에 이루어짐.

73) Advisory referendum 혹은 plebiscite

(2) 정당통합 사례

① 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LNP)

- 역사적 배경 : 퀸슬랜드 통합과정 이전부터 수십 년간 자유당과 국민당의 통합은 계속된 논쟁점이었음.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연합정당으로서 집권을 하였으며, 현재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빅토리아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⁷⁴⁾ 주에서, 연합정부를 구성함.
- 퀸슬랜드 주 내에서만 자유당(Liberal Party)과 국민당(National Party of Australia)이 통합을 하여 현재의 자유국민당(LNP)이 구성됨.
- 구성 배경 : 기존의 두 정당 모두 중도 우파의 성향을 지니고 있고 연방에서는 연합정당을 이루면서도 퀸슬랜드에서 같은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호주에서 유일하게 한 주 내에서 자유당이 국민당에게 뒤쳐지는 현상이 발생함. 이를 이유로 2008년 5월, 면밀한 계획 없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이룰 것을 선포함.
- 통합 과정 : 전격적으로 우편으로만 이루어진 양쪽 당원들의 투표에서 대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와 당헌 초안을 퀸슬랜드 자유연합 당헌 및 특별 당대회와 퀸슬랜드 국민당 특별회담에 제출하여, 참석한 대표들이 이 두 문서를 통과시킬 것을 합의함에 따라, 2008년 7월 27일 통합 과정이

⁷⁴⁾ New South Wales (NSW), Victoria (Vic.), Western Australia (WA)

마무리됨.

- 논란 : 통합 당시에는 국민당이 캔버라연방의회에서 힘을 잃는다는 우려와 당의 전통이 와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 되었음⁷⁵⁾. 하지만, 통합 없이는 당시 양쪽 당 모두 퀸슬랜드 주민의 신임을 얻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의견 등도 역시 제기 되었음. 현재는, 퀸슬랜드 통합을 계기로 호주연방 전체의 자유-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당대표 토니 애보트(Tony Abbott)가 두 정당의 연합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발언을 하여⁷⁶⁾, 당분간은 현재 연합 상태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② 지방자유당(Country Liberal Party-CLP)

- 북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 1974년도에 창당되었으나, 퀸슬랜드 주의 LNP와는 다른 성향을 지님.
- 기존의 지방당(Country Party)인 당시에는 소규모였던 북준주 내 자유당의 완전한 지지를 받으면서 통합함. 1979년도에 자유당과 국민당과의 합동을 이루었으나, 한 쪽 당에 특별히 치우치는 경향은 없음.

③ 자유당(Liberal Party)

- 호주의 주요 정당 중 하나인 자유당도 통합에 의해 구성됨.
-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1909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선전하자 이에

⁷⁵⁾ <<http://www.abc.net.au/am/content/2007/s2148388.htm>> (2012.3.29. 검색)

⁷⁶⁾ <<http://www.standard.net.au/news/local/news/general/abbott-visits-colac-rejects-party-merger/2499813.aspx>> (2012.3.29. 검색)

대처하기 위해 당시 총리인 알프래드 디어킨(Alfred Deakin)의 주도로 자유무역당(Free Trade Party)과 보호무역당(Protectionist Party)을 통합하여 영연방자유당(Commonwealth Liberal Party)을 설립하였고, 이 정당이 자유당의 시초로 여겨짐. 이후 1931년에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을 거쳐서 1945년도에 오늘날의 자유당이 형성됨.

④ 호주 민주당(Australian Democrats)

- 이전의 호주정당(Australia Party)과 자유당이 자유주의적 성향을 잃었다는 논란을 내세우며 남호주(South Australia) 주에 설립한 신자유운동당(New Liberal Movement)이 1974년도와 1975년도 연방선거에서의 지지하락을 계기로 1977년도에 통합함.
- 중도적인 성향을 지니며, 2007년 연방선거에서 패배하여 의회진출에 실패함으로써 30년 만에 대의권을 상실함.

(3) 정당연합 관련 규정

- 연합 방식은 호주의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에 의하여 조성됨.
- 선거 시기의 한시적 연합 허용 여부와 구속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4) 정당연합의 사례 및 논란

① 자유-국민당 연합('The Coalition')⁷⁷⁾

- 자유-국민 연합당의 사실상 영속적인 연합으로 인해, 현재 호주의 정치는 자유-국민당 연합과 노동당의 양당체제로 여겨짐.
- 공식적인 연합년도는 1922년으로 기록됨. 이후 몇 차례 파기되거나 불화가 있었던 경우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약 100년간 단결된 모습을 유지함.
- 선호투표제에 의하여 자유-국민당 연합의 두 정당은 노동당과 함께 지역구에서 삼파전을 이루며, 선거 때마다 순위를 교환함. 이는 양당 후보 모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지역구에서 다수 득표제와 선호투표제가 결합된 효과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결과를 초래함.

(5) 선거 시기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거연대 협용여부 및 조건

- 한시적인 선거연대를 다루는 법률 및 사례 등은 현재까지 없음.
- 선거 후에 절대 다수가 없는 의회가 생길 경우(hung parliament), 의석을 차지한 소수당이 세력 균형의 결정권(balance of power)을 가짐에 따라 주요 정당을 지지하며 연대를 이룬 사례만 있음.
- 현재의 자유-국민당연합은 통합을 이룬 퀸즐랜드주와 북준주 외에는 필요시에는 자유당과 국민당 양쪽 모두의 로고를 표기함.

⁷⁷⁾ <<http://www.abc.net.au/am/content/2007/s2148388.htm>> (2012.3.29 검색)


일 본

일본 해외통신원 : 홍성협

1.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식

(1) 자민당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따라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선출방법이 다름. 고이즈미 정권 때는 총재가 결정했으며, 현 민주당의 오자와가 자민당에 있었을 때는 간사장이 결정했음. 또한, 정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 경우도 있고 70세 이상 정년제와 각 현련(縣連)이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공모해 선정하는 경우도 있음.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비당원이 참여할 수 없음.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사례 없음.

○ 선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례도 없음.

(2) 민주당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민주당 규약 제18조)

- 중의원의원선거, 참의원의원선거 후보자의 공인/추천은 임원회의를 거쳐 선거관리 위원장의 발의 하에 상임간사회에서 결정
 - 국회의원 바레대표선거 공인후보 명부기재 순서는 임원회의를 거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의 하에 상임간사회에서 결정
 - 도도부현 지사 및 시장 후보자의 공인 및 추천은 임원회의를 거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의 하에 상임간사회에서 결정
 - 그 외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인 및 추천은 임원회의를 거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의 하에 상임간사회에서 결정
 - 선거대책위원회는 임원회와 상임간사회의 승인 하에 공인 및 추천에 일부를 현련(縣連)에 일부 위임할 수 있음.
 - 상임간사회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인/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음. 2011년 통일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나가노현은 현의원, 시의원, 마을의원 후보를 공모로 모집해서 현련(縣連)에서 결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과정에 비당원이 참여할 수 없음.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사례 없음.
- 선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례도 없음.

2. 주요정당의 지도부 선출방식

(1) 자민당

○ 지도부 구성 및 임기, 주요 권한

- 자민당의 지도부는 당 총재와 당3역으로서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함. 그 외에 임원은 1년이나 중임이 가능하며 총재가 도중에 총재가 바뀔 경우는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됨(자민당 당규 제13장 제84조).
- 총재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함(자민당 당규 제2장 제4조).
- 간사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당무를 집행함(자민당 당규 제2장 제8조). 간사장은 실질적인 당의 실세로, 간사장 밑에는 선거대책국, 보도국, 인사국, 경리국, 정보조사국, 국제국 등이 있음(자민당 당규 제2장 제11조).
- 총무회장은 25명으로 구성된 총무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운영을 담당함(자민당 당규 제 3장 제39조).
- 정무조사회장은 15명이내로 구성된 정무회의를 관장함(자민당 당규 제4장 제43조).

○ 지도부의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총재의 선출은 당소속 국회의원, 당원, 자유 국민회의 회원, 국민정치 협의회 회원의 공개선거로 결정됨(자민당 총재공선 규정 제1장 제1조).
- 총재의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음(자민당 총재공선 규정 제3조~제17조).
 - 당 본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10인 구성
 - 각 도도부현 총재 선거관리위원회 5인 구성
 - 선거인 명부의 작성
 - 당 소속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등록

- 후보자의 선거운동
- 투표와 개표
- 간사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고 총재가 지명함(자민당 당규 제9조).
- 총무회장은 총무회의에서 선출되나 실제적으로는 총재가 지명하고 있음(자민당 당규 제39조).
- 정무조사 회장은 총무회의 승인을 받고 총재가 지명함(자민당 당규 제44조).

○ 지도부 선출과정에의 비당원의 참여

- 총재 선출시 비당원도 참여가 가능
- 자유국민회의, 국민정치협의회의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 참여가 가능함(자민당 총재공선 규정 제4조, 제6조).

○ 지도부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사례 없음.

- 지도부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
 - 당기 위원회에서는 지도부 선출만의 아닌 일반 선거 등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권고, 훈계, 당의 요직 정지, 사임공고, 비공인, 당원 자격의 정지, 탈당권고, 제명의 처벌을 함(자민당 규율 규약).
 - 하지만 근래에 지도부 선출과정에서의 부정사례는 보고된바 없음.

(2) 민주당

○ 지도부 구성 및 임기, 주요 권한

- 민주당의 지도부는 대표, 간사장, 정책 조사회장, 국회 대책 위원장, 참의원 의원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표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차 9월말까지이며 그 외의 지도부도 대표와 같은 임기를 가짐(민주당 규약 제6장 제11조).
-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이며 간사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당 운영전체를 총괄함. 정책 조사회장은 당의 정책 활동 전체를 총괄하며 참의원의원 회장은 참의원 국회활동 전반을 총괄함(민주당 규약 제6장 제11조~제 16조).

○ 해당 지도부의 선출방법 및 절차 규정

- 대표의 선출은 소속 국회의원, 당적이 있는 지방자치제 의원, 국정 선거의 공인후보자, 현련(縣連)을 통해 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당원과 서포터의 의한 선거에서 선출됨(민주당 규약 제6장 제11조).
- 대표의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음(민주당 대표선거 규칙 제2조~제15조).
 - 당 본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인을 구성
 - 각 현(縣)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 3인 이상을 구성
 - 유권자 등록명부의 작성
 - 선거일 공시
 - 중앙과 지방의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되어있지 않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후보자 등록
 - 정견발표와 30일간의 선거활동
 - 당원과 서포터 투표
 - 지방자치제 의원 투표
 - 공인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 투표
 - 개표
- 간사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가 선임하고 당 대회 또는 양의원

-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민주당 규약 제13조).
- 정책 조사회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가 선임하고 당 대회 또는 양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민주당 규약 제14조).
- 국회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가 선임하고 당대회 또는 양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민주당 규약 제15조).
- 참의원 의원 임원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함(민주당 규약 제16조).

○ 지도부 선출과정에 있어서 비당원도 참가가능

- 각 현련(縣連)에 등록되어 있는 서포터 중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는 대표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지도부 선출선거의 선관위 위탁사례 없음.
- 지도부 선출과정에서의 선거부정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
 - 대표자 선거에 있어서 선거부정이나 불법자금 제공이 있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민주당 대표선거 규칙 제18조).
 - 선거운동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공정성이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선언이 가능함(민주당 대표선거 규칙 제18조).

3. 정당통합, 정당연합, 선거연대

(1) 정당통합 관련규정

- 정당교부금을 수령하는 정당은 해산이나 그 외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작성하고 관련부처인 총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정당조성법」 제5조제3항).

- 2개의 이상의 정당의 통합할 경우 제5조에 의거하여 존속정당과 신설 정당으로서 간주하여 정당교부금을 수령할 수 있음(「정당조성법」 제13조 제1항).
- 2개 이상의 정당의 통합할 경우 통합 후에 존속하는 정치단체나 새로 설립된 정치단체는 전자인 경우는 득표총수에 해당합병 해산정당의 득표총수를 해당 정치단체 총 득표수로 간주하며 후자인 경우에도 득표총수에 해당합병 해산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숫자를 해당 정치단체 득표총수로 취급함(「정당조성법」 제13조 제2항).
- 정당의 분할될 경우에 제2조제1항 제1호 규정인 국회의원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정당으로서 정당교부금을 수령할 수 있음(「정당조성법」 제13조 제3항).
- 존속정당, 신설정당, 분할정당은 정당설립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무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함(「정당조성법」 제13조 제4항).
 - 「정당조성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존속정당, 신설정당, 분할정당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할 때에는 합병에 관한문서와 분할에 관한 문서를 복사하여 총무성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정당조성법」 제13조 제5항).
 - 총무대신은 접수를 받은 후 신속히 관련정당의 정당교부금의 산정과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함(「정당조성법」 제13조 제6항).

(2) 정당연합규정

- 일본에서는 정당연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나 1990년대 이후로 정당연합이 일반적 현상이며, 연립정권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근래에 일본에서 선거연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9년부터 2009년 까지의 지민당과 공명당의 연계가 있음. 이 두 정당은 그 동안의 선거에서 소선거구선거에서 공명당 후보가 없는 경우 자민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공명당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연대를 해왔으나 2012년 들어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가 관계해소를 언급함.
- 한편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이 선거협력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룸. 하지만 사민당인 연립정권을 탈퇴하고 국민신당도 소비세 인상법률과 관련 연립정권 해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임.
-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나고야, 아이치,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신당들이 선거연대를 통해 정권창출을 꾀하였음. 참고로, 이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은 감세일본, 일본일등, 오사카유신 등으로, 감세일본과 일본일등이 연대하여 나고야에서는 감세일본 추천 후보가, 아이치에서는 일본일등 추천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음. 오사카에서는 오사카유신 추천 후보가 우리당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음.
- 다음 중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추락하고, 우리당이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우리당과 오사카유신 등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의 연립정권이 성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특이한 점은 후보자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후보자를 추천해 선거연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선거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